KOTRA 자료 19-011

NTB

비관세장벽

애로 해소 사례집

CONTENTS

1 비관세장벽 개요 및 동향

- 비관세장벽 소개
- 비관세장벽 현황
- 비관세장벽 협의회

비관세장벽 소개

▶ 수출에 끼치는 악영향, 비관세장벽

비관세장벽(Non Tariff Barrier)은 관세를 제외하고 무역활동에 영향을 주는 무역제한 조치를 의미한다. 무역을 통해 오가는 상품의 수량이나 가격을 변화시켜 잠재적으로는 국제교역에 악영향을 주는 정책 조치들이 이에 속한다. 간혹 비관세장벽(NTB)과 비관세조치(NTM : Non Tariff Measure)가 혼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비관세조치는 무역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일컫는 광의적 개념이고 비관세장벽은 그 중 기업의 무역활동에 악영향을 주는 조치를 말한다. 현재는 국제기구, 연구기관, 학자들이 목적에 따라 구분하는 방법과 종류가 달라서 공식적으로 합의된 정의는 없다. 다만 각국의 비관세조치로 인해 특정 국가의 기업이 애로를 겪게 될 경우 대부분 '비관세장벽' 으로 분류한다. 우리 정부에서는 대응의 효율성을 위해 수입규제조치(무역구제조치)로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를 별도로 관리, 대응하고 있고, 그 외의 비관세조치 중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는 규제들을 비관세장벽으로 분류하여 대응하고 있다.

관세/비관세구분	대분류	소분류
관세조치	관세(Tariff)	
관세조치	수입규제조치* (무역구제조치)	반덤핑관세(AD: Anti-dumping duty)
		상계관세(CVD: Countervailing duty)
		세이프가드(SG: Safeguard)
	비관세장벽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 to Trade) 위생 및 식물 위생조치(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 통관(제도 및 절차), 수출입통제(수입금지/허가, 수량규제, 가격통제), 기타 : 정부조달, 투자장벽, 서비스장벽,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반경쟁조치 등

▶ 낮아지는 관세장벽, 높아지는 비관세장벽

기존 무역에서 큰 장벽으로 작용했던 관세는 WTO 및 FTA의 영향으로 점차 낮아져가는 추세이다. 1998년의 전 세계 평균 실행관세율은 10.51%로 다소 높았다. 하지만 2008년 7.13%, 2012년 6.8% 으로 점점 낮아지면서 자유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었다. 그러나 2017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 정책이후 전 세계적으로 '자국우선주의' 와 '보호무역주의' 의 정서가 급격하게 커지면서 각 국은 무역 장벽을 다시 세우고 있다. 관세를 통한 자국 산업 보호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면서 각 국가들은 비관세장벽의 비중을 높이면서 자국 시장을 보호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이 경험하는 애로사항은 점점 증가하면서 비관계 장벽이 무역활동의 큰 장애물로 부상하고 있다.

▶ 선진국보다 개도국에서 빈번한 발생

이러한 비관세장벽은 선진국은 물론이고 개도국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며 개도국의 발생건수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개도국의 제조업 육성 정책, 수입 대체 정책 등을 추진함에 따라 자국 산업과 시장을 보호하기 위함으로 판단된다. 거기에 개도국의 인프라 부족, 세관원들의 부당 압력, 제도의 미비로 이 지역에 진출하는 수출기업들이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WTO내에서도 애로 해소를 위한 논의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17년 2월 22일 발효된 무역원활화 협정(TFA)을 들 수 있다. 이는 통관규정의 투명성 강화, 통관절차의 간소화, 세관당국 간 정보교환 등 통관의 신속화 및 무역비용 감소를 통한 국가 간 교역 확대를 목표로 하는 협정이다. 이를 통해 우리기업이 개도국에 수출하는 경우에 겪었던 복잡한 통관절차, 자의적 품목분류에 의한 부당한 관세징수 등의 애로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세계 비관세장벽 현황]

년도	수입규제			기술적 장벽		기타 무역제한조치			총계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TBT	SPS	수출관련	수입관련	기타	
2012년	208	23	24	2,196	1,219	22	124	13	3,829
2013년	287	33	18	2,140	1,299	31	131	7	3,946
2014년	236	45	23	2,240	1,634	25	125	12	4,340
2015년	229	31	17	1,987	1,681	44	169	15	4,173
2016년	298	34	11	2,332	1,392	21	101	13	4,202
2017년*	251	42	8	2,585	1,480	17	78	13	4,474

자료 : WTO(Trade Policy Review Body, Annual Report 2018)
· 2017년: '16년 10월 중순 ~ '17년 10월 중순

비관세장벽 현황

▶ 수입규제조치 현황

2017년 기준으로 전 세계 비관세조치는 총 4,474건에 이르렀는데 그 중 수입규제가 301건, 비관세장벽이 4,173건이었다.

TIP: 수입규제조치 안내

반덤핑	수입국으로 판매되는 특정 품목의 '수출 가격'이 수출국 시장에서 판매되는 동일 품목의 '국내 가격'보다 낮은 '덤핑(Dumpling)'으로 인해 수입국의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겪을 경우,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 반덤핑 관세(Anti-Dumping Duty)를 부과하는 조치. 덤핑 여부와 상대국 산업에 피해 발생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작용한다.
상계관세	수출국으로부터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원받아 가격경쟁력이 높아진 물품이 수입되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입힌 경우, 이를 불공정 무역행위로 보고 억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무역구제 조치이다. '보조금', '산업피해'가 주요 키워드이다.
세이프가드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업체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거나 입힐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품목의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관세를 인상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단기간 내에 수출 급증이 있었는지, 또 산업 피해가 발생했는지가 주요 쟁점 사항이다.

수입규제 중에서도 반덤핑 규제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인도, 미국, EU, 브라질이 특히 많이 도입하고 있다. 1995년부터 2017년까지 누적된 건수에서 이들 상위 4개국의 비중이 46%로 거의 절반가량을 차지했고 우리나라는 이 중 7.4%로 피소국 중 2위에 해당하고 있어 많은 국가들로부터 피해를 받고 있다. 상계관세의 경우, 대부분 선진국에서 신흥국 제품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조치로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에서 철강을 대상으로 상계관세를 부과받고 있다(총 8건 중 철강 7건, 전자제품 1건). 세이프가드는 신흥국에서 주로 산업 보호를 위해 발동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에 미국에서 세탁기 및 태양광전지를 대상으로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는 등 산업보호를 위한 조치가 활성화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피해 방지가 중요해지고 있다.

[반덤핑 누적조사개시건수('95 ~ '17)]

제소국 / 피소국	인도	미국	EU	브라질	아르헨티나	캐나다	호주	터키	캐나다	남아공	멕시코	파키스탄	한국	인니	말련	기타	계
중국	194	133	111	94	88	·	40	76	36	36	52	26	23	21	12	180	1,122
한국	59	38	16	21	14	35	27	13	15	12	4	13	·	15	15	39	336
대만	56	27	21	18	10	17	13	11	11	11	5	8	4	11	8	24	255
미국	36	·	12	33	12	43	11	4	16	7	22	3	10	1	1	14	225
인도	·	31	30	18	12	9	5	13	7	15	4	5	7	10	1	23	190
태국	43	12	16	10	6	8	24	10	5	5	·	8	5	9	8	15	184
인니	35	16	13	5	6	5	16	10	4	7	1	11	5	·	13	23	170
일본	33	30	6	3	2	43	9	1	5	·	1	4	16	1	2	14	170
러시아	22	12	23	8	2	11	1	6	6	2	4	2	1	1	·	30	131
말련	31	5	17	3	4	5	15	9	2	4	·	4	6	9	·	11	125
브라질	8	14	5	·	41	1	2	2	8	9	5	2	1	·	·	13	111
EU	56	·	·	9	1	26	·	·	·	·	1	·	·	·	3	10	106
기타	209	222	119	146	65	36	66	58	82	51	30	34	23	17	18	219	1,395
계	782	540	389	368	263	239	229	213	197	159	129	120	101	95	81	615	4,520

자료: WTO I-TIP 통계

▶ TBT,SPS 현황

비관세장벽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TBT와 SPS이다. 최근 10년간 24%이상 증가한 비관세조치 건수 중에서도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TBT는 Technical Barriers to Trade 의 약자로 무역기술장벽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에너지, 환경과 관련된 기술적인 규제를 포함하며 라벨링, 인증 등 기업들이 현지 시장에 진출할 때 겪는 애로의 상당수에 해당한다. 무역상대국간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 등으로 인해 상품이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는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TBT의 최근 10년간의 동향을 살펴보면 2007년 대비 2017년 증가율이 무려 109%에 이른다. 또한 WTO에 통보된 건수 역시 2017년, 2,585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 중 개도국 비중이 76%를 차지하고 있으며 건강과 안전, 품질 보장, 환경 보호, 소비자 보호 등이 기술규제 도입의 주된 목적이다. 분야별로는 식품, 의약품의 비중이 가장 높고 화학세라믹, 전기전자, 교통안전, 생활용품, 농수산품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연도별 TBT 통보 건수 추이]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통보문	1,231	1,523	1,893	1,889	1,773	2,196	2,140	2,240	1,988	2,338	2,585

SPS는 Sanitary and Phytosantiary 의 약자로 위생 및 식물검역조치를 의미하며 주로 식품, 농수산품에 대한 검역 관련 규제를 지칭한다. 나라별로 그 기준이 상이하고 문화적 배경이 달라 갈등이 많은 부분이기도 하다. 무역 현장에서의 애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WTO에서는 국가별 기준을 국제 기준에 맞추도록 지속적으로 개정,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WTO에 통보된 SPS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면 아시아 등 개도국을 중심으로 최근 10년간 97%나 증가했고, 2017년 기준 총 1,480건 중 개도국의 위생검역 규제는 절반을 훨씬 넘은 71%를 차지한 것을 볼 수 있다. 중남미 지역이 전체의 25%(367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아시아, 중동, 북미, 유럽, 아프리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사항별로 확인해보면 인체 건강 및 안전과 관련된 규제 통보가 9,394건으로 가장 많고 소비자 보호, 환경보호, 품질 관리 등의 규제가 그 뒤를 잇고 있다.

[2000~2017년 SPS 통보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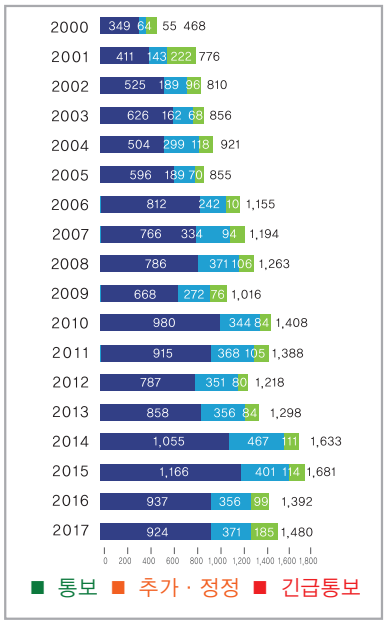

[2000~2017년 개도국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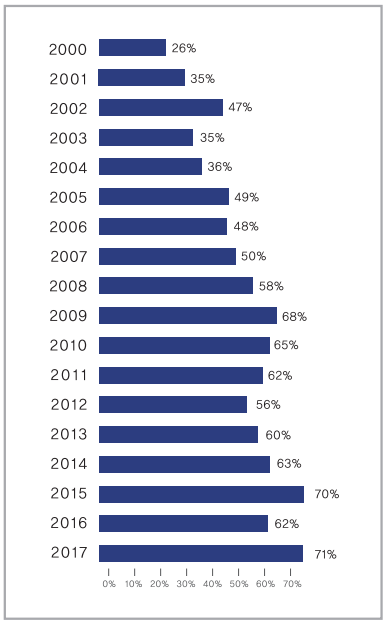

자료: WTO Annual Report 2018

목적별 WTO SPS 통보건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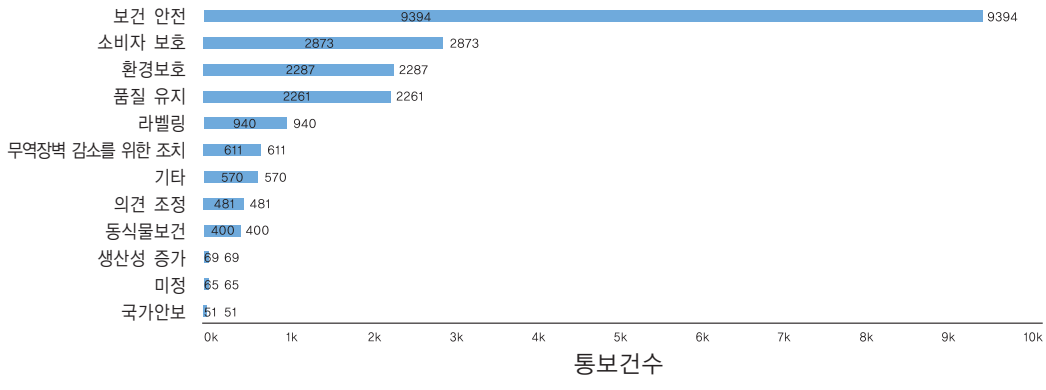

▶ 무역분쟁으로 인한 기타 무역제한조치의 강화

비관세장벽 중 TBT와 SPS를 제외한 기타 무역제한조치는 수입통관절차 애로, 수출입 수량 제한, 관세쿼터, 현지 규제 등의 조치가 있다. 최근 동향을 살펴보면 무역원활화 협정 체결 등 한동안 감소추세였으나 최근의 글로벌 무역 분쟁으로 인해 다시 강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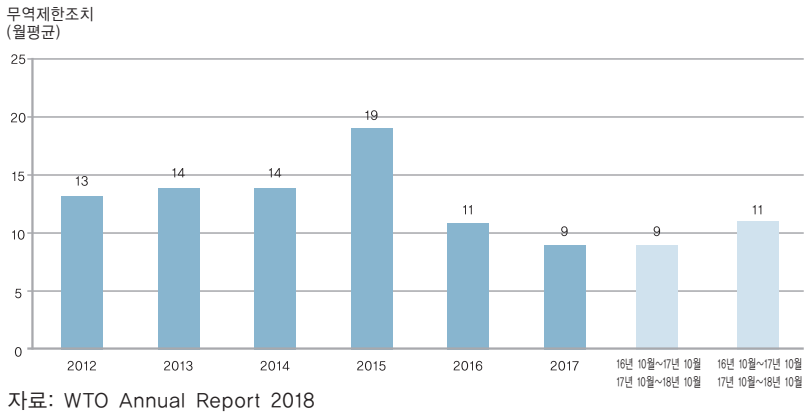

자료: WTO Annual Report 2018

2018년 하반기 WTO 무역 발전 보고서를 살펴보면 기타 무역제한조치의 경우 2015년을 제외하면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 말부터 2018년 중순 월 평균 11건으로 직전 기준 대비 월평균 2건의 규제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TBT와 SPS를 제외한 무역제한조치로 인한 영향력을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845억 달러로 추정되는데 직전 2017년 기준 787억 달러와 비교하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TBT, SPS를 제외한 관세쿼터, 수량제한 등 기타 무역제한조치에 대한 주의를 요하고 있다.

규제분야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6년 10월 ~17년 10월	17년 10월 ~18년 5월 (7개월)
수입	**124**	**131**	**125**	**169**	**99**	**78**	**78**	**65**
관세	70	82	77	105	64	48	46	44
통관	32	26	18	30	16	19	21	5
세금	6	5	8	16	6	3	3	8
쿼터	14	16	7	12	12	7	7	8
기타	2	2	15	6	1	1	1	0
수출	**22**	**31**	**25**	**44**	**20**	**19**	**17**	**7**
세금	3	5	11	13	6	5	5	2
쿼터	12	10	8	7	10	8	7	4
기타	7	16	6	24	4	6	5	1
기타	**13**	**7**	**12**	**15**	**13**	**13**	**13**	**3**
기타	8	1	1		4	1	1	2
현지규제	5	6	11	15	9	12	12	1
총합	**159**	**169**	**162**	**228**	**132**	**110**	**108**	**75**
월평균	13.3	14.1	13.5	19.0	11.0	9.2	9.0	10.7

자료: WTO Annual Report 2018

비관세장벽 협의회

▶ 비관세장벽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공동협의체

비관세장벽의 경우 그 양태가 복잡하고 규정된 원칙이 존재하지 않아 불확실하며 효과를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더욱이 나라별로 서로 얽힌 주권 연계성 때문에 해당 기업이 자체적으로 응대, 대처하기 어려운 문제가 많다. 이 때문에 정부 및 유관기관들은 공동으로 대응하여 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비관세장벽협의회는 비관세장벽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 위한 민관 공동협의체로,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애로 발굴 및 해소를 위해 설립되었다. 현재 산업부 신통상질서 전략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무역협회가 사무국을 담당하고 있으며 식약처, 국표원 등 관계부처와 업종별 단체, 경제단체 및 유관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여 변화하는 글로벌 무역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 중이다.

▶ 체계적 대응을 위한 협동체계

비관세장벽 협의회의 가장 큰 임무는 비관세장벽을 발굴하고 이에 대해 조직적으로 대응하여 기업 애로를 해소하는 것이다. 각 협단체 및 KOTRA 해외 무역관을 통해 수집되는 비관세장벽과 기업애로 사례를 협의회 소속 담당자들과 공유하고 체계적으로 관리 및 대응하는 것이 주 업무이다.

사례 중 해결이 시급한 사례는 협의회에 상정하여 각 기관들의 참여 촉구와 대응 전략 마련을 강구하고 있다. 또한 이렇게 해결된 애로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관리하고 있다.

비관세장벽협의회(위원장:신통상질서전략실장)

사무국(무역협회)

정부부처	업종단체	유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무역협회
외교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대한상공회의소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철강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비철금속협회	KOTRA
보건복지부	한국석유화학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농소순식품유통공사
관세청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특허청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조달청	한국기계산업진흥회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식품산업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선주협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금융투자협회	
	해외건설협회	

2 TBT

- 애로 유형
- 지원 내용
- 해소 사례

애로 유형

앞에서 설명했듯이 TBT는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의 약자로 무역기술장벽을 의미하며 이를 유형별로 나누면 '기술규정 및 표준에 의한 장벽', '강제 검사 및 인증제도상의 장벽', '라벨링 요건상의 장벽'으로 나눌 수 있다.

기술규정 및 표준에 의한 장벽	기술규정의 경우 자국민의 보건,안전, 환경보호 등을 위해 만드는 것이지만, 실제 운영하는데 있어 외국기업에게 불리한점이 발생하면서 기술장벽화
	표준의 경우 강제성이 없으나, 소비자의 선호에 따라 실질적인 강제성을 가질 수 있으므로 기술장벽화
	정부의 강제검사제도 운영시 표준을 인용하거나 기술기준으로 활용할 경우 기술장벽으로 작용
강제검사 및 인증제도상의 장벽	중복적인 검사요구 및 검사절차상 과도한 시간 소요, 특정 인증마크 획득의무화 등으로 인한 기술장벽화
라벨링 요건상의 장벽	특정 라벨 부착의 의무화로 특정 생산요소에 대한 차별화 및 기술력이 부족한 국가에 대한 기술장벽화

이 범주 내에서 실제로 수출 및 현지 진출 시 기업들이 주로 경험하는 TBT 애로 형태는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바로 '급격한 시행일', '적용되는 규제의 불투명성 및 절차상 문제' 그리고 '과도 규제 적용'이다. 각 애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급격한 시행일	공표 후 즉시 시행이거나 시행유예기간이 부족하거나, 혹은 아예 규제 도입을 공지하지 않은 경우 기업들의 수출이 갑작스레 중단될 수 있다. 시행일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그 기준이 제조일인지 통관일인지 판매일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수출 시 규제 적용에 일관성이 없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락한다.
적용되는 규제의 불투명성과 절차상의 문제	규제 관련 절차 및 방법이 명시되지 않아 기업들이 수출 시 규제를 따를 수 없는 경우이다. 또한 적합성 평가 절차를 중복하여 시행하거나 유사 인증을 인정하지 않아 기업들이 불필요한 과정을 진행하여 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도 무역장벽의 요소로 볼 수 있다. 보통 일부 남미, 아프리카 국가 등 세부 절차가 규정되지 않은 국가들에서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과도 규제 적용	국제표준과 합일되지 않은 표준 혹은 제품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과도한 기준을 도입하는 경우는 기업들의 수출에 큰 장애가 된다. 예를 들어 같은 세탁기라고 해도 드럼, 전자동, 이조식 세탁기는 에너지 및 물 사용량, 세탁 성능 등 다양한 면에서 다른 기준과 효율값을 가지고 있기에 별도의 규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단순하게 세탁기라는 이유로 하나의 규제만 도입하는 경우 이러한 다양한 기준을 맞출 수 없어 다양한 품목들의 수출이 중단되기에 이른다. 특히 기술 발전으로 다양한 제품들이 발명되고 있는 실제 산업 현실에서 기업들이 직면하게 되는 중요한 무역장벽으로 대두되고 있다.

지원 내용

기술이 발전하고 첨단 제품이 쏟아져 나오기에 각 국가들은 TBT에서 오는 애로사항을 극복하기 위해 협정을 맺을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그 결과 나타난 것이 WTO TBT 협정이다.

WTO TBT 협정은 WTO('95년 출범) 전체 회원국(157개국/ '12년 말)을 대상으로 효력을 가지는 강제력 있는 협정이다. 이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불필요한 장벽 금지, 비차별 원칙, 투명성 보장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각 국가별 기준이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제도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이나 적합성평가절차를 재개정할 때에는 WTO 사무국을 통하여 다른 WTO 회원국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타회원국으로부터 TBT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관련 문서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 WTO회원국은 의무적으로 공식 질의처를 설립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한-미 FTA협정 이행합의를 계기로 국가기술표준원에 TBT 중앙사무국을 통합 설립하면서 종합적인 대처를 수행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국가 대외신뢰도를 높이는 동시에 관련 국내제도를 선진화하여 우리 기업들의 해외시장진출을 촉진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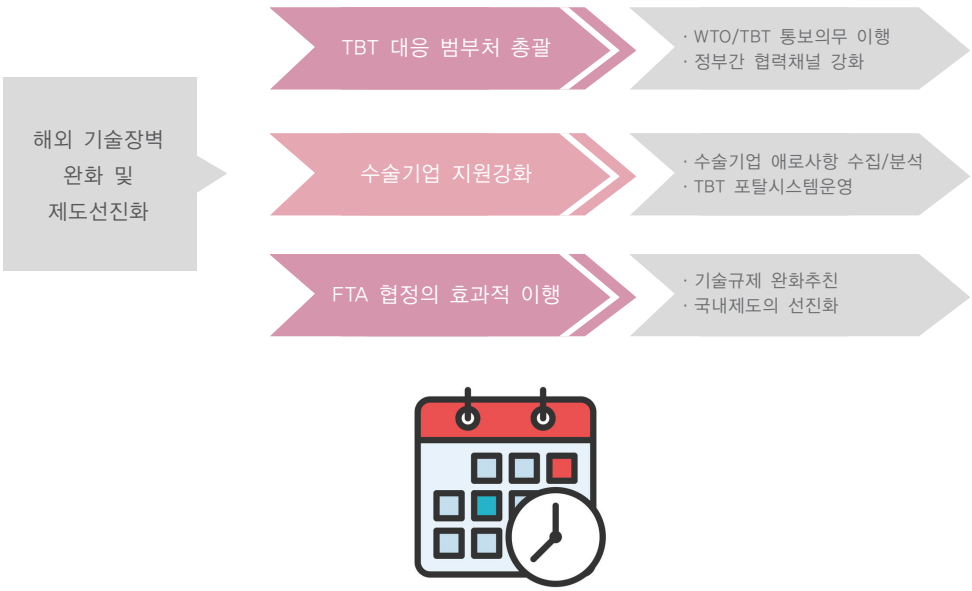

TIP: 특정무역현황(Specific Trade concerns ; STC)

WTO 회원국은 교역대상국의 신규 또는 시행중인 표준, 기술규제, 적합성평가 절차가 자국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TBT 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이를 의제로 제기할 수 있는데, 이를 특정무역현안(STC)라고 한다. STC는 각 회원국의 신규 기술규제 통보문의 내용뿐만 아니라 이미 실행되고 있는 기존의 기술규제에 대한 내용 또한 의제로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특정무역현안을 제기하고 있어 1995년부터 2017년까지 총 59건의 특정무역현안을 제기했다. 2017년에는 아래 표와 같이 4개국 총 10건에 대해서 특정무역현안을 제기하는 등 지속적으로 기술 규제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7년 특정무역현안 제기 현황]

구분	대상국가	특정무역현안	소관부처
1	중국	영유아용 조제분유 성분등록 관리규정	식약처
2		의료기기 감독관리 조례	
3		의료기기 등록비	
4		네트워크 안전법	국표원
5		네트워크제품 및 서비스 보안 심사방법	
6		암호기술법	
7 8	인도	2차 전지 안전규제 WEEE2016 개정안	
9	사우디	타이어 에너지효율 라벨링	
10	EU	무선기기지침 규제	

TIP: know TBT (해외기술규제 정보 서비스) http://www.knowtbt.kr/

우리 기업들의 무역기술장벽을 해결하기 위해 TBT 중앙사무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TBT 대응 플랫폼으로 해외기술규제 동향조사 및 번역 서비스, 수출애로상담, 해외기술규제 종합자료실 등 운영하고 있음.

*본문 내용 출처 : know TBT(www.knowtbt.kr) 참고

해소 사례

1. 바뀐 정보에 적응하기 위한 시간 확보 _ 콜롬비아 에너지효율 라벨링 규제

무역에 있어서 상대국의 정보 변화는 상당히 민감한 요소가 된다. 오늘까지 되었던 것이 내일 당장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시행유예 기간을 늘려 수출 기업이 대응할 시간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콜롬비아는 남미 지역에서 칠레, 페루와 함께 우리나라와 FTA를 맺은 국가로 앞으로 교역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점 국가 중 하나이다. 동시에 여러 가지 무역 이슈가 다발할 것으로 예상되어 기업들의 관심이 쏠려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그래서 콜롬비아가 발표한 에너지효율 라벨링 제도의 변화에 기업과 기관이 모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당연했다. 콜롬비아의 에너지효율 라벨링인 RETIQ((Reglamento Tecnico de Etiquetado Energetico)가 2015년에 발표되고 이후 2016년 8월 31일부터 효력이 발효될 예정이었다. 이는 에너지절약과 지구환경 보호를 위해 세계 각국이 에너지절약 제품 보급확대를 위한 에너지 효율기준 및 라벨링제도를 운영하는 것과 궤를 같이 하는 제도였다.

라벨링 대상은 우리나라 주요 주력 수출품인 가정용 냉장고, 에어컨, 단상 · 삼상 모터, 백열구, 세탁기이며, 2017년부터는 상업용 냉장고와 더불어 전기온수기, 가스온수기, 가스렌지가 추가된다. 사실 규제 내용은 제품별 시험방법, 샘플링 방법이 국제표준 ISO, IEC 규격과 유럽표준(EN)에 부합되어, 업계가 대응하는데 기술적으로 어려움은 없었다. 다만 시행일이나 적합성평가 절차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업계가 준비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게다가 콜롬비아와의 지리적 거리를 고려하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 이후에 수출하기에는 물류흐름이 너무 끊긴다는 점이 우려되었다. 다시 말해, 해당 규제가 시행된 이전에 생산되었지만, 시행일 이후 도착하거나 유통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손 쓸 방법이 없는 것이었다. 현지에서 적합성 시험을 받는데에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규제의 난이도를 떠나 시기상의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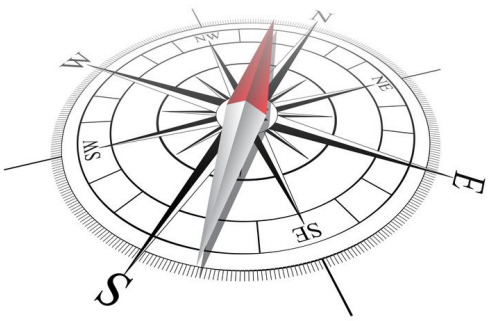

우리나라 TBT 중앙사무국은 공식서한(2015년 5월, 2016년 2월) 및 WTO TBT 위원회 기간 동안 진행된 양자회의(2016년 6월)를 통해 인증취득에 필요한 정보, 시험소 정보, KOLAS 성적서(국제공인시험시관성적서) 및 제조사시험소 성적서 인정 여부 등을 긴급히 문의 및 확인했다. 그리고 시기적인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하여 규제 시행유예 6개월을 요청했다. 최소 6개월의 시간이 있어야 기 선적한 수출물품에 대하여 규제 시행을 막을 수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규제 발효 전에 현지에서 시험 평가를 통한 요건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콜롬비아 측에서는 TBT 중앙사무국의 요청에 대해 시험기관 정보제공, 라벨도안 명확화, 일부제품의 시험조건 및 허용오차 정보 제공과 함께 1년간 제조자 시험성적서와 제조자 적합선언서를 인정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해당 규제의 시행일인 2016년 8월 31일 이전의 생산 제품에 대해서는 에너지 라벨 부착을 제외해준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미리 콜롬비아의 발효일을 살펴보고, 신속히 콜롬비아 측에 시행유예 요청을 하는 등 신속한 대응에 나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예외규정을 적용하는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 비록 6개월의 시행유예는 수용하지 않았지만 2016년 8월 31일 이전의 생산 제품에 대해서는 에너지라벨 부착을 제외해 줌으로써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 애로는 대부분 해소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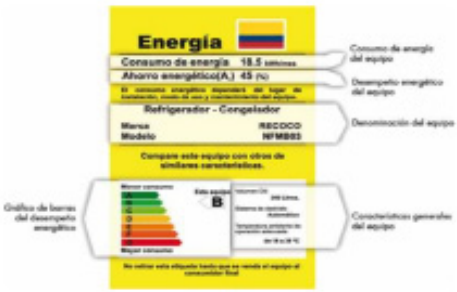

콜롬비아 에너지절약 라벨링 RETIQ 예제(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콜롬비아 에너지효율 라벨링 규제

- 규 제 명: Technical Regulation on rational energy-use labelling for certain types of electrical and gas end-use equipment for marketing in Colombia
- 관련부처 : 콜롬비아 광물에너지부
- 목 적 : 에너지 절약
- 대상제품 : 에어컨, 냉장고/냉동고, 안정기, 농형유도 전동기, 세탁기, 전기온수기, 가스온수기, 레인지 및 오븐
- HS 코드 : 8415.10, 8415.82.0000, 8418, 8419.11.0000, 8419.19.0000, 8404.10, 8516.10.0000, 7321.11.0000, 8501, 8450
- 규제내용 : 제품군별로 에너지효율 특정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에너지 라벨을 부착해야 함
- 시 행 일 : 관보 게재 후 6개월
- 수출액 동향(천불) : '14년(51,340), '15년(35,317), '16년(35,317)

* 무역협회 기준

2. 과도한 규제 적용에 대한 애로 해소 _ 인도 2차 전지 안전 규제

때로는 협상할 수 있는 시간을 놓쳐 아무런 대처 시도도 못해보고 망연자실하게 상황을 맞이해야 할 때가 있다. 정보를 입수하고 조금이라도 빠르게 협상을 시도하면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성과는 얻게 마련이다.

인도의 전기안전 규제대상 확대는 우리나라의 TBT 중앙사무국 뿐 아니라 WTO TBT위원회에서도 특정무역현안으로 제기했을 정도로 주목해야 할 일이었다. 때문에 2014년 10월, 인도가 전기안전 규제 대상을 2차 전지를 포함한 30개 제품으로 확대하고 이를 2015년 8월 7일부터 시행할 것이라는 정보에 긴장할 수 밖에 없었다. 게다가 현지 진출기업이 전해준 소식에 따르면 인도 정보가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 system for Conformity Testing and Certification of Electrical Equipment– Certification Body, IECEE CB Scheme)에 따른 CB 성적서를 확대 품목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첫 번째는 사이즈가 작은 셀 단위 제품도 마킹이 의무화 되어 이를 생산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2016년 9월 17일 시행예정인 신규 표준의 원활한 준수를 위한 유예기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우리나라 TBT 중앙사무국은 인도는 IECEE CB scheme 회원국으로서 회원국 간 시험결과를 상호 인정해야 할 의무를 강조하며,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 system for Conformity Testing and Certification of Electrical Equipment– Certification Body, IECEE CB Scheme)에 따른 CB 성적서 수용을 요청했다. 전기/전자 제품에 대한 시험 및 인증 리포트를 상호 인정하는 다자간 상호협정 및 국제 시스템인 IECEE CB Scheme은 인도 또한 그 대상국이므로, 당연히 한국의 CB 성적서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따라서 전기안전 규제 확대 대상에도 적용을 해줘야 하는 것이 옳았다. 왜냐하면 이는 전기제품의 안정성에 대한 인증을 IEC표준에 의거 동일한 시험방법을 적용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적서보다 더 심각한 것은 2차 전지와 관련한 규제였다. 2차 전지는 보통 가장 작은 단위인 1)셀, 그리고 셀이 모인 2) 모듈을 기본으로 이러한 모듈이 여러 개가 모인 3) 팩이라는 상품으로 구성된다. 결국 하나의 이차전지 팩 제품은 수십~수백 개의 셀로 구성되면서 셀 자체는 제품단위에

서는 보이지 않는 구성요소이다. 때문에 인도정부가 셀단위에 BIS(Bureau of India Standards) 마크를 부착하라고 요구한 것은 터무니없는 조치였다. 셀 단위로 부착하는 것은 현 공정상 불가능 하거니와, 불필요한 원가가 증가되는 요소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나라 TBT 중앙사무국은 한 차례의 공식서한(2016년 2월)과 WTO TBT위원회 기간 동안 진행된 세 차례의 양자회의(2016년 3월, 6월, 9월)를 진행했다. TBT 사무국은 제1, 2, 3차 WTO TBT 위원회 양자협의, 인도 규제당국 현지 간담회 등을 통해 우리기업의 요청사항을 전달했으며, 공정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이러한 규제는 인도의 2차 전지 수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했다. 2차 전지는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에서 대량 생산하기 때문에, 단 한 번의 규제가 인도의 관련 산업에 지장을 초래할 것은 뻔했다. 결국, 인도측은 셀 단위에 대한 인도인증마크(BIS)의 부착 의무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이어서 우리나라 TBT 중앙사무국은 인도는 IECEE CB scheme 회원국으로서 회원국 간 시험결과를 상호 인정해야할 의무를 강조하며,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 system for Conformity Testing and Certification of Electrical Equipment– Certification Body, IECEE CB Scheme)에 따른 CB 성적서 수용을 요청했다. ECEE CB Scheme은 전기전자 제품의 안전과 전자파에 대한 '국제인증제도'로, 전세계 43개국 회원국 간 중복시험 없이 해당국가의 인증을 획득할 수 있는 국제적인 상호인정제도이다. 따라서 인도정부가 이를 수용할 경우 애로사항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는 상황이다. 현재 이에 대한 대응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완전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위의 경우 국제적으로 이미 정립된 제도라할지라도, 현지 제도에 반영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이러한 경우, 반드시 KOTRA무역관 등을 통해 강력히 건의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다.

1) IECEE-CB Scheme : 전기전자 제품의 안전과 전자파에 대한 국제인증제도로서 전세계 43개국 회원국간 중복시험 없이 해당국가의 인증을 획득할 수 있는 국제적인 상호인정제도

인도 2차 전지 안전 규제

- 규 제 명: Electronics and Information Technology Goods (Requirements for Compulsory Registration Order, 2012)
- 관련부처 : 인도표준원(Bureau of Indian Standards)
- 목　　적 : 전자제품 안전
- 대상제품 : TV, 컴퓨터, 모니터, 노트북, 셋톱박스, 2차전지 등 30개 제품
- HS 코드 : 504.40, 9405.10.9000, 8506, 8507, 8541.40, 8517.12, 8470, 8471, 8443.3, 8504
- 규제내용 : 인도 국가표준에 부합해야 하며, 지정된 시험소에서 시험, BIS 승인을 받은 후 BIS 승인번호를 제품 및 포장에 표기
- 시 행 일 : 15. 12. 1(2차 전지)
- 수출액 동향(천불) : '14년((142,395), '15년(159,429), '16년(162,710)

* 무역협회 기준

2차전지의 구성(출처 : 삼성SDI 홈페이지)

3. 수출 지연을 막은 신속한 대처 _ 우루과이 에어컨 에너지효율 규제

모든 일이 그렇겠지만 특히 무역의 세계에서는 빠른 정보 입수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수많은 기업들이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을 그만큼 벌어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조율을 통해 합의를 도출할 기회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인증방법과 수준은 국가마다 다르다. 우리나라와 같이 산업적으로 고도화되어 있는 나라는 각종 인증방법이 세계 기준에 부합하고, 효율적으로 개선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개발도상국은 국제기준에 다소 부합하지 않는 방법을 그 기준으로 내세울 때가 있다. 우루과이의 에어컨 및 열펌프 에너지 효율 규제가 그 대표적인 예였다.

2016년 8월, 우리나라 TBT 중앙사무국은 우루과이가 WTO 통보 없이 에너지효율 규제를 시행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 해당 규제는 Law 18.597(국가 내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에 관한 법) 제4장 및 MIEM 262/14 결의안에 따라 에어컨 및 열펌프에 대해 의무적으로 우루과이 표준 UNIT 1170:2009에 따라 인증을 받고 제품에 라벨링을 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 표준이 이미 폐지된 ISO 5151:1994에 맞춘 기준이라는 점이었다. 또한 최신 국제표준과 시험방법 인정 범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어서 새로 표준으로 삼겠다고 하는 UNIT 1170:2009에 따라 인증을 받게 되면 시험 소요기간만 3배가 증가하게 될 판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우루과이에 해당 품목 관련 134만불(2016년 기준) 정도 수출하고 있어서 자칫 피해가 커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우루과이가 규제를 시행할 당시, 우루과이에는 이미 우리나라 D사, S사 등의 제품이 많이 진출한 상황이었다.

최신 국제 표준에는 공기 엔탈피 시험 또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우루과이의 금번 UNIT 1170:2009은 제품 시험 시에 칼로리미터 시험만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는 상당히 비효율적인 것이었다. 왜냐하면, 칼로리미터 기준으로 시험할 경우 3일이 걸리지만, 공기 엔탈피 시험은 1일이면 시험이 마무리 된다. 즉 3배의 기간이 소요될 이러한 방식으로는, 시험 및 물류비용의 급격한 증가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우루과이에 해당 품목 관련하여 134만 불(2016년 기준)만큼 수출하고 있는 우리기업들에겐 큰 피해가 예상되었다.

이에 우리나라 TBT 중앙사무국은 공식서한(2016년 8월)을 통해 최신 버전의 ISO 표준과 부합된 UNIT-ISO 5151:2010이 2016년 5월 채택된 점을 고려하여 UNIT 1170의 최신 국제표준 부합화 및 공기 엔탈피 시험방법 인정을 요청했다.

우리 측의 요청에 우루과이는 TBT위원회에서 진행한 양자회의(2016년 11월)를 통해 현재 해당 표준을 ISO 5151:2010에 부합시키기 위한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개정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UNIT 1170 및 ISO 5151:2010에 따른 시험성적서를 모두 인정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우루과이 측에서 해당 문제를 직시하고는 있었지만, 한국기업의 요구사항을 알지는 못했기에 KOTRA 무역관과 TBT사무국의 요청이 없었다면, 한국기업은 억울하게도 과거 방식으로 중복하여 시험을 실시해야 할 위험에 처했던 것이다. 자칫 기업 수출에 지연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을 신속하게 해결, 무역기술장벽을 제거한 사례였다.

우루과이 에어컨 에너지 효율 규제

- 규 제 명: Law 18.597 '국가 내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에 관한 법', Resolución MIEM 262/14
- 관련부처 : MIEM(Ministry of industry, Energy and Mining) URSEA(Services Regulatory Unit of Energy and Water)
- 목　　적 : 소비자에게 정보 제공, 라벨링
- 대상제품 : 에어컨, 열펌프
- HS 코드 : 9405
- 규제내용 : 에너지 효율 라벨링 대상이 되는 에어컨은 관련 우루과이 표준(UNIT 1170)을 준수해야 함
- 시 행 일 : 시행중(2014.11.28. 시행)
- 수출액 동향(천불) : '14년(2,266), '15년(872), '16년 (1,349)

* 무역협회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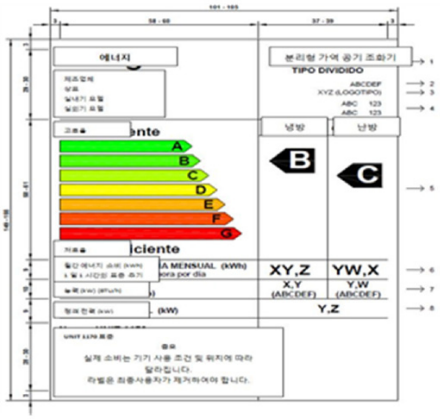

〈에너지 효율 라벨 도안〉

4. 규정의 명확화를 통한 애로 해소 _ UAE 식기세척기 에너지 효율 라벨링

모호한 규제 요건이나 과도한 기준은 수출 기업에게 상당히 골치 아픈 일이다. 이현령 비현령식으로 애매하게 대처하다가 큰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출 관련 규제만 확실하게 정리해둔다면 이러한 업무애로는 상당부분 해소된다.

2015년 10월 5일.
아랍에미리트가 식기세척기에 적용되는 에너지 효율 라벨링 규제를 WTO에 통보한 날이다.
이 규제는 빌트인(built-in) 형태의 제품을 포함하는 가정용 식기세척기와 비상업용 식기세척기에 적용되는 것으로, 제품 시험방법, 에너지 및 물 효율 산출식, 효율 등급 기준, 라벨링 기준 등을 규정한 것이다.

문제는 이 규정이 상당히 모호했다는 데 있었다. 규제 시행일과 시행기준이 명확하지 않은데다가 연간 물 소비량 산출 공식의 도출 근거, 물 효율 등급 결정 기준과 라벨 내 물 효율 등급 표기방법도 애매했다. 우리나라 TBT 중앙사무국은 2016년 1월, 위 사항들과 더불어 식기세척기에 적용되는 최저 효율 등급 기준의 유 · 무에 대해 확인하고, 타 국가(요르단, EU) 대비 과도한 사후관리 허용오차 기준(6%)을 유사한 기준(10%)으로 완화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공식 서한을 아랍에미리트 규제당국에 제출했다.

이러한 우리 측 질의는 효과적으로 반영되어, 같은 해 12월 아랍에미리트가 발표한 규제 개정안에는 효율 등급 결정 기준 및 라벨 내 효율 등급 표기 방법이 상세히 규정되었다. 덕분에 애매모호했던 부분은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개정안에서 2017년 4월 1일이 시행일로 확정되면서, 임박해진 시행일에 맞춰 수출기업이 어떻게 규제를 이행할 것인가가 새로운 애로 사항으로 대두했다.

이에 TBT사무국은 2차 공식서한을 발송했고, 2017년 3월에 공식 답변서를 아랍에미리트 규제 당국으로부터 회신 받았다. 아랍에미리트는 공식 답변서를 통하여 동 규제는 2017년 8월 중 시행되고 규제 시행은 시판 및 통관제품 모두에 적용된다는 답변을 했다. 또한 연간 물 소비량 산출식은 연평균 세척횟수 280회를 기준으로 산출되며 식기세척기 대상 최저성능기준을 운영한다고 답변했다.

비록 우리측의 사후관리 허용오차 완화 요청의 경우는 가능하지 않다는 대답을 주었지만 지속적인 TBT 중앙사무국의 규제 애로사항 해소 요청으로 애로사항의 대부분은 해소되었다.

각 효율 등급별 물소비량은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다.

등급	연간 물소비량(AWC)(리터)	
	현재	개정(안)
5stars(최고효율)	AWC＜1800	AWC＜2800
4stars	1800≤AWC＜2100	2800≤AWC＜3150
3stars	2100≤AWC＜2400	3150≤AWC＜3500
2stars	2400≤AWC＜2700	3500≤AWC＜3850
1stars(최저효율)	2700≤AWC＜3000	3850≤AWC＜4200

UAE와 같이 제조업 기반이 약한 나라에서는 이러한 TBT의 규제가 위에 같이 자세하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호한 규정에 대해서는 KOTRA무역관이나 TBT중앙사무국을 통해 UAE 표준측량청(ESMA)과 협의하여 최대한 꼼꼼히 사전 체크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UAE 식기세척기 에너지 효율 라벨링

- 규 제 명: Labeling – Energy Efficiency Label for Electrical Appliances Part 6: Dishwashers
- 관련부처 : 에미리트 표준화, 계량국(Emirates Authority for Standardization and Metrology; ESMA)
- 목　　적 : 소비자에게 정보 제공, 라벨링
- 대상제품 : 식기세척기
- HS 코드 : 8422.11
- 규제내용 : 식기세척기의 에너지 및 물 소비량을 측정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에너지 및 물 소비 효율 등급에 따라 제품에 라벨을 부착해야 함
- 시 행 일 : 2017.8
- 수출액 동향(천불) : '15년(11,467), '16년(11,395), '17년(9,763)

* 무역협회 기준

〈에너지 효율 라벨 도안〉

5. 세부절차가 존재하지 않는 애로 해소 _ 칠레 진공청소기 에너지 효율 규제

무역애로에 대한 응대는 말 그대로 '합' 이 중요하다. 기업의 입장과 나라 간의 입장이 모두 알맞게 조율되어야 애로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업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협상테이블에 앉았을 때 비로소 해결이 가능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2015년 8월, 칠레는 가정용 건식 청소기에 에너지 효율 성능기준 규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WTO에 통보했다. 사실 우리업계는 이미 제품별 시험방법으로 국제표준(IEC)를 따르고 있어서 기술적인 요구사항을 만족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지만 규제 시행일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제도 이행에 애로가 발생했다. 게다가 2016년 12월 시행 예정인 해당 규제를 준수하려면 칠레 내에 공인 시험소가 있어야 했는데 이 시험소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 규제 준수를 위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었다.

특히, 관련 시험소에서 무작위 샘플 3개에 대하여 시험을 수행하고 유효기간이 1년인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함에도 이러한 시험소에 대한 정보를 우리 기업들이 잘 알 수 없는 것도 큰 문제였다. 인증은 매년 재시험 및 갱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인 시험소 리스트와 연락처 확보는 매우 중요했다.

현지에 이미 진출한 D사와 A사 등은 발 빠르게 시험소를 방문하려 했으나,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었다. 기업 차원에서 정보를 얻기 어려운 해당 상황에서, 우리기업들이 TBT사무국과 KOTRA 무역관 등에 도움을 요청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정보조사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기관과 기업은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바로 지정된 공인 시험소가 없다는 사실이었다. TBT사무국 등 관련기관이 칠레 무역관 등 관련 담당자를 통해 알아본 결과, 제도는 시행되고 있지만 제도를 시행할 시험소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규제 시행 예정일이 2016년 12월임을 고려하면 시간 내에 적법한 방법으로 규제를 준수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우리나라 TBT 중앙사무국은 공식서한(2016년 5월)과 제2차 WTO TBT위원회 기간에서 진행된 양자회의를 통해 업계가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험소 지정을 요청했다. 각 모델 당 운송, 시험, 인증 등 약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을 감안하여 규제 시행일 역시 시험소 공포 후 4개월 후로 설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칠레는 7월에 시험소가 지정될 예정이기에 12월 시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답변을 주었다. 하지만 7월이 다 되어도 공인시험소가 지정되지 않았고 우리나라 TBT 중앙사무국은 2차 공식서한(2016년 10월)과 제3차 WTO TBT 위원회의 양자 회의를 통해 아직까지 공인시험소가 지정 및 공표되지 않아 규제 준수에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했다. 칠레 역시 우리나라의 지적을 받아들여 규제 시행일 이전에 시험소가 지정되지 않으면 개정을 통해 시행 연기를 할 것이라는 답변을 주었다.

결국, 2016년 12월에 중국 내에 시험소를 한 곳 지정했고 제도 시행은 2017년 6월로 연기되었다. 만약 지속적으로 시험소 지정과 이에 맞춘 규제 시행 연기를 요청하지 않았다면 속수무책으로 상당한 무역 손실이 났을 터였다. 하지만 민관합동의 외교적인 대응을 통해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었고 이에, 차질 없이 수출할 수 있었다.

규제에 대한 시행 통보만 하고 이를 수행할 기관 지정이나 담당 부서 안내 등 절차적 방법에 대한 공지가 뒤늦게 나온다면 제도를 이행하려는 기업들이 부득이 이를 시행하지 못하여 억울한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번 사례는 기업의 요청에 우리 정부가 빠르게 대처하여 상대국 규제 절차를 신속하게 마련하도록 유도한 사례라 볼 수 있다. 위와 같이 규제의 내용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측면에서 불편함이 있을 때에는 가급적 TBT사무국 등 국내 정부기관을 적극 이용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칠레 진공청소기 에너지 효율 규제

- 규 제 명: 진공청소기의 에너지 효율성 분석 및/또는 시험 계획서 프로젝트
- 관련부처 : 칠레 에너지부
  전기연료감독부(SEC: Superintendencia de Electricidad y Combustibles)
- 목　　적 : 환경 보호 – 에너지 효율
- 대상제품 : 건식 진공청소기
- HS 코드 : 8508
- 규제내용 : 2400W 이하의 가정용 건식 진공청소기는 동 규정에 따라 성능 검증을 해야 하고 인증 취득을 받아야 함
- 시 행 일 : '16. 12. 30(통관일 기준)
- 수출액 동향(천불) : '14년(10), ' 15년(12), '16년(17)

* 무역협회 기준

6. 급박한 시행일로 인한 애로 대응 _ 이라크 에너지 라벨링 규제

어떤 애로사항이 발생했을 때 가장 힘든 점은 '물어볼 곳이 없다' 는 것이다. 문제를 파악하면 해결책을 찾아 뭔가 노력이라도 해볼 텐데, 문제는 발생했으나 이에 대해 물어 볼 곳조차 없다면 그야말로 망망대해에 버려진 느낌이 들기 마련이다.

법령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세부 사항을 조율하거나 새로운 조건을 만드는 것도 가능한 일이다. 문제는 사전 고지 없이 법을 만들고 기준을 세워 도입하는 경우이다. 특히 에너지라벨의 경우 TBT 애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사례이다. 단시간에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 아니고 나라별 조건을 맞추기 위해 각종 실험을 다시 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는 까닭이다.

2016년 이라크 표준청의 에너지 라벨 도입 과정에서도 이런 문제 때문에 업계의 부담과 혼란이 생긴 사례가 있다.

당시 이라크 표준청(COSQC, Centr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and Quality Control)*은 에너지 라벨 도입과정에서 사우디 표준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여 국제 규격에서 벗어난 최저에너지 성능기준(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s)을 도입하는 안을 발표했다. 에너지라벨 규제는 사실 수출시 직면하는 규제이지만, 너무 급박하게 규제시행일이 앞당겨져 있었던 것이 문제였다. 시행일이 '16.10.1임에도 우리나라 기업이 알게 된 것은 그로부터 1개월 전이어서 준비할 시간이 없었는데, 이는 주요수출국이 아닌 국가로의 특정 수출 물품만을 해당 규격으로 맞추기에는 매우 짧은 기간이다.

둘째로, 이라크는 사우디 고유의 SASO(Saudi Arabia Standards Organization) 규정을 도입하고 있었는데, 사우디는 COC(Certificate of Conformity) 인증을 동일제품이라 하더라도 매 선적 시마다 발행받아야 하는 애로사항이 존재했다.

이미 발표일로부터 도입 시기까지의 기한이 너무 촉박한데다 사우디 규정 자체가 국제규범과 달라 제 시기에 준비를 마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사우디의 경우 바로 얼마 전 대용량 에어컨이나 자동차 에너지 효율 규제에 대하여 시행 또는 판정기준이 모호하여 WTO TBT위원회에서도 규제 철회 또는 완화 대상으로 선정된 바 있었다. 이대로 계속 진행되다면 단순한 애로발생이 아니라 수출 중단까지도 발생할 수 있었다. 이에 에어컨 제조사인 S사와 L사는 TBT사무국에 건의할 수 밖에 없었으며, 이라크 표준청과 규제협력을 위한 업무협의를 제안했다.

이들 제안에 KOTRA 바그다드 무역관은 우선 에너지 라벨링 도입 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시작했다. 무역관 담당 직원이 주기적으로 이라크 표준청에 방문해서 상황을 파악하고 업무를 협의하는 것은 물론, 이라크 에너지 라벨링 담당부서 책임자와 함께 한국을 찾아 기업을 방문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바그다드 무역관, 이라크 표준청을 초청하여 한국에너지공단, 국가표준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참가한 가운데, S사 연구소에서 직접 제품별 평가방법을 듣게 한 것이다. 이 때 특히 유럽 또는 미주 쪽 수출물량에 대한 ISO 기준에 따른 에너지효율 측정방법을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는 사우디 고유의 규제보다 ISO 기준이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도 친숙한 규제이므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여 보다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노력이 성과를 발휘했는지 이라크 측에서는 연구소 시찰 이후, 당시 2016년 10월 1일부터 실행 예정이었던 규제를 2017년 4월 17일 시행으로 변경하였다. 덕분에 기업들도 충분한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라크의 에너지라벨링 규제 변경에서 가장 큰 문제였던 사우디 표준을 도입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우디의 규정이 아닌 우리 기업이 익숙한 ISO 및 EU 규정으로 활용하게끔 조율했다. EU 규정은 최근 소비자관점에서의 에너지라벨의 이해가 쉽도록 '19년을 기점으로 변경되고 있었고, 세계 최대시장 중 하나인 EU 지역 진출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라벨링 규제를 점진적으로 준비하고 있었다. 등급 수의 차이 등 약간의 상이한 점을 제외하고 이라크 표준청이 EU의 규제를 차용한다면, 손쉽게 해당 규제를 이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기업들의 수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었다.

이라크는 WTO 가입국이 아니기 때문에 WTO를 통한 문제 제기와 중재, 해결이 어렵다. 또한 기술규제에 대해 ISO 표준과 같은 세계기준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공식적으로 언급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하지만 이번 사례는 양자 간의 의견 차이를 우리나라 TBT사무국 및 정부기관이 중간에서 적극 개입하여 능동적으로 해결한 사례라 볼 수 있다.

7.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춘 적절한 규제제도의 도입 _
캐나다 온타리오 주 에너지 효율 규제 애로

까다로운 규정일수록 더 빠르고 정확하게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 규정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여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을 때는 대처 뿐 아니라 설득과 이해의 과정이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

캐나다는 자국의 에너지효율법(Energy Efficiency Act)에 따라 1995년부터 에너지 효율 규정을 시행해오고 있었다. 이 중, 에너지를 사용하는 제품에 대하여 각 주별로 에너지효율 세부 기준을 정해놓고 있었는데, 기업들은 세부 기준에 맞춰 인증취득 및 라벨 부착의 의무를 지게 되었다.

[각 州별 TV 에너지효율(동작모드) 소비전력 규제수준]

州(주)	규제명	규제 시행	소비전력기준(W)			
			대기 · 오프	은(동작)		
				88"	75"	65"
온타리오	Reg. 404/2012 (제품의 에너지 및 물 효율)	'14.7월	0.5	422*	309*	238*
퀘벡	O.C. 434-2017, O.C. 875-2017 (전기 또는 탄화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제품의 에너지 효율)	'19.1월	0.5			
브리티시컬럼비아	Reg. 14/2015 (에너지효율 표준 규정)	'15.2월	0.5	없음		
그 외	SOR/94-651, SOR/2016-311 Energy Efficiency Regulation	'94.10월	0.5			

*온(동작)모드 소비전력기준(W)=0.019-tv화면면적(㎠)+25

특히 퀘벡 주는 동작 상태에서의 소비전력까지 규정하고 있어 개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북미지역에서 우리나라 기업은 이미 TV의 선두주자로 대활약 중이었는데, 최근에는 고해상도 TV인 4K이상의 UHD(Ultra High Definition) TV 시장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고 해상도 TV일수록 선명도가 높고 면적이 넓어 그 만큼 소비전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허나, 캐나다의 에너지 효율 기준은 이러한 기준을 고려하지 않은 과거의 기준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것이 문제였다. 이는 선명도가 UHD에 비해 훨씬 낮거나 면적이 작은 TV를 기준으로 하는 규정이므로, 신제품, 특히 대형 UHD TV에는 적용될 수가 없는 규정이기도 했다. 시대가 바뀌었음에도 여전히 옛 규정으로 판단하는 잘못된 상황이었던 셈이다.

국내의 S사, L사는 당시 유럽 등 UHD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캐나다 지역 역시 먼저 진출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해당 규제로 인해 인구가 많은 퀘백 주로 진출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사실 EU 지역 등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이 신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고 시장 진입 단계 이므로 유사한 에너지효율 규제가 있더라도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해당 규제 적용을 제외하도록 유도한바가 있었다. 미국, 인도, 칠레, 한국 등은 58인치 초과 TV를 에너지효율 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EU도 4K 초과 TV에 대해 2021.12.31일 까지 규제 적용을 유예한 선례가 있는 상황이었다. 때문에 이들 선례를 기준으로 하여 기업들은 캐나다 퀘벡주에서도 기술기준을 개정하여 4K 초과 TV 제품을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TBT중앙사무국에 강력히 요청했다.

사실 신기술이 적용되는 4K, 8K 대형 UHD TV는 아직 보편화되지 않는 제품으로서, 일본, 한국 일부 기업만이 경쟁을 벌이는 니치 마켓에 불과하다. 하지만,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우선 선점이라는 관점에서 경쟁력 있는 우리나라 기업이 재빨리 시장을 차지해야 하는 필요도 분명 존재했다. 이에 TBT 사무국은 WTO TBT 위원회 양자회의(‘18.3, ‘18.6)를 통해 신기술이 적용된 4K, 8K급 UHD 대형 TV에 대해, 미국, EU 등과 같이 한시적으로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 결과, 퀘벡주 기술기준을 개정하여 4K 초과 TV 제품을 규제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할 수 있게 되었다.

전자제품은 그 다른 분야에 비해 발전 속도가 빠른 분야이다. 때문에 규제가 그 기술을 따라가기 어려운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전 세계적으로 기술 경쟁력 있는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 통로와 마켓을 규제 제외를 통해 터주었다는 점이 매우 고무적인 사례가 아닐 수 없다.

3 SPS

- 애로 유형
- 지원 내용
- 해소 사례

애로 유형

SPS의 경우 인체 및 동식물의 생명, 건강보호의 문제가 있어 검역관련 요구 사항이 민감하다. 또한 종교적, 문화적 배경이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특정 식품과 관련하여 수입을 금지하거나, 별도의 인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 위생 검역과 관련된 인증과 규제가 모두 다를 수밖에 없어 하나의 통일된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어렵다. 때문에 각 국가별로 상이한 인증, 규제를 숙지하고 해당 국가의 기준에 맞춰서 해당 시장에 들어가도록 주의해야 한다.

상품이 인체나 동식물, 또는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방식이 산업별, 품목별로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규제 방안이 사안별로 다르게 적용되어 우리기업들이 이에 대해 대처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지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SPS 애로와 관련하여 주로 우리기업들이 겪는 문제를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터무니없는 기준	– 검역의 기준 수준이 국제 기준보다 터무니없이 높을 경우
비과학적 규제	– 규제 내용과 관련하여 과학적 근거가 없음 – 현실적으로 달성이 불가능한 조건을 내세울 경우
내국민과 외국인을 차별	– 동일 산업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외국 기업만 별도의 인증, 절차를 요구할 경우
식품/의약품 구분기준 상이	– HS코드 분류상 상품 인정이 다른 경우. Ex) 오미자차 : 한국(식품), 일본(의약품) 분류가 상이

SPS와 관련한 특이사항을 살펴보면 개발도상국의 제소 비율이 증가하고 오히려 선진국의 제소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지역별로는 중남미 지역이 가장 높고 아시아, 중동, 북미, 유럽, 아프리카 순으로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전체 SPS규제 중, 개발도상국의 규제가 71%를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신규 특정무역현안(STC) 제기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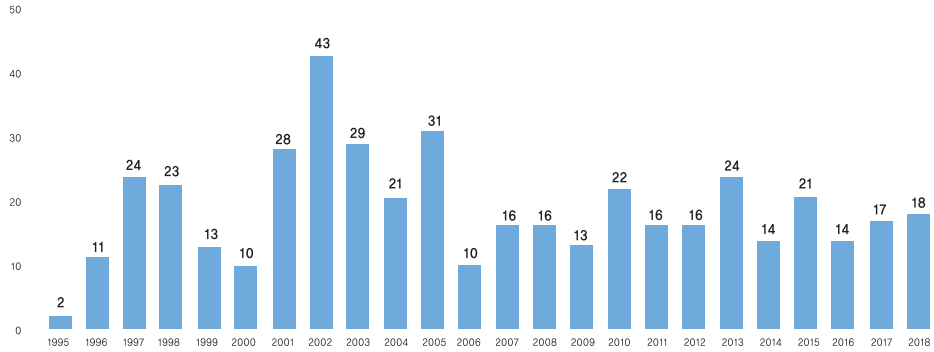

특정무역현안(STC) 제기 국가별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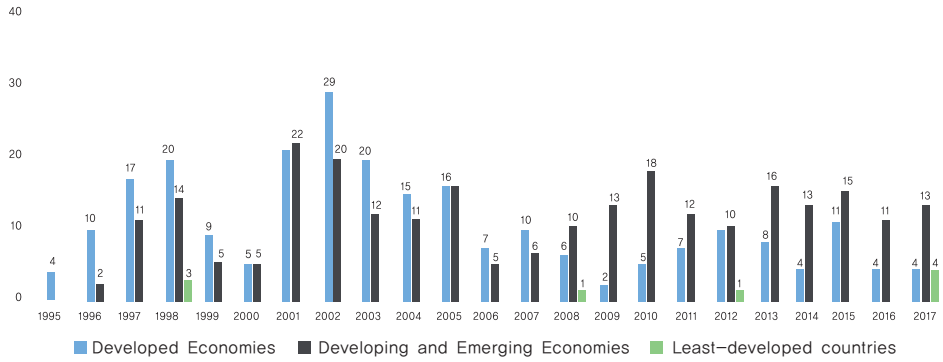

주제별 STC 제기 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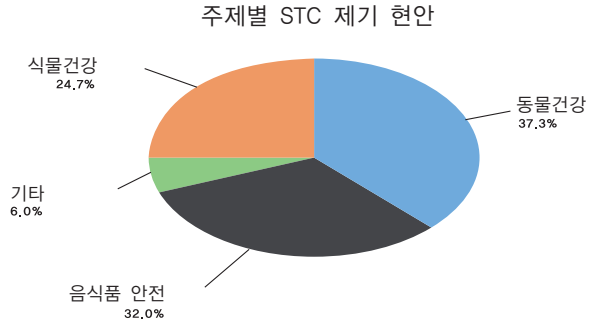

이는, 동 · 식물 등에 대한 위생 또는 검역 수준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를 강화한 조치로도 볼 수 있지만, 관련 물품 수출액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국가이기에 수입 동 · 식물 등에 대한 비관세장벽을 활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지원내용

인체의 건강, 동식물 등 환경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증가하면서 각 국가들은 SPS 관련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동시에 이것이 무역에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 WTO SPS 협정을 바탕으로 SPS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서로 협력하고 있다. SPS 협정은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SPS 규제가 국제기준과 일치해야 함을 명시한다. 또한 객관적 입증이 가능할 시 수출국의 조치를 자국의 조치와 동일한 조치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위생 보호의 적정수준 결정 시 이것이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필요 이상의 제한적 조치가 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SPS 협정에도 불구하고, 각 국가들의 규제나 조치가 무역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부당하게 적용되어 무역장벽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WTO SPS 위원회에 특정무역현안(STC : Special Trade Concern)이란 공식적 의제를 제기하여 다자간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구제 조치들을 바탕으로 WTO 회원국들은 잘못된 규제들을 수정해가면서 SPS가 무역장벽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도록 노력하고 있다.

WTO SPS 협정에 기반하여 위생 검역과 관련하여 담당하고 있는 부처는 다양하다. 이는 SPS 규제가 각 산업별, 품목별로 다양하기에 담당하고 있는 기관들도 전문적인 여러 기관들이 참여해야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에서 산업별, 품목별로 전문적인 대응을 실시하고 있고, 이들 부처 및 산하 기관이 비관세장벽 협의회에 참여하면서 전문성과 통일성 모두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Tip: STC

WTO 회원국은 SPS 조치가 통상 마찰 요인으로 우려될 경우 해당 조치를 SPS 위원회 정례회의의 특정무역현안(STC) 으로 상정할 수 있다. 최근 SPS STC 논의 동향을 살펴보면,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 증대로 식품안전상의 목적으로 제기된 STC 안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편이며, 개발도상국의 SPS STC 논의 참여가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는 SPS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STC를 제기한 사례는 없으며 지지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중국 등의 국가가 활발한 STC 제기를 통해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위생 및 검역 문제해결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나라도 주도적인 STC 제기로 양자간 협의에서 성과를 보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다자간 논의를 활용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 의약품, 바이오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해당 품목별로 지원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어 각각의 상품 수출 시 필요한 사항을 찾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 홈페이지(www.mfols.go.kr) 정책정보

1. 식품 : 국가별 규제정보, HACCP GMP, 통상정보, 할랄정보, 해외부적합정보, 수출국 표시정보, 수출축산물 작업장정보, 최신동향 제공
2. 의약품 : 임상시험규제정보, GMP규제정보, 국가별규제정보, 국내허가품목정보, 해외특허정보 제공
3. 바이오의약품 : 전 세계 인허가 규제정보, 산업정보, 글로벌 규제동향, 컨설팅 지원사업
   http://www.mfds.go.kr/bioitplatform/bpis/index.do
4. 중소화장품기업 수출지원센터 : 수출정보, 법령정보, 시장정보, 원료정보, 업체정보, 교육정보, 정부지원정보
   http://helpcosmetic.or.kr/
5. 의료기기 통합정보 : 의료기기 관련 기술 개발, 수출 활용
   http://www.nifds.go.kr/wpge/m_222/cont_03/cont_03_06_03_01_01.do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의료기기통합정보 BANK' 에서는 개발, 인허가, 수출에 대한 정보 뿐 아니라 기술개발과 산업동향, 임상시험에 대한 정보 및 기준규격, 시험검사, 각종 허가 정보까지 다방면에 걸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특히 기술 장벽과 관련된 소식을 빠르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기기 관련 수출 사업을 하고 있다면 놓치지 말고 챙겨 살펴보아야 할 사이트이다.

TIP: HACCP

해썹은 위해요소분석(Hazard Analysis)과 중요관리점(Critical Control Point)의 영문 약자로서 해썹 또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 한다. 간단하게 말해 위해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적 식품안전관리체계를 말한다.

식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요인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사전에 위해요인의 발생여건들을 차단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한 시스템적인 규정을 의미한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식품 안전 관리 체계로 인정받고 있으며, 미국, 일본, 유럽연합, 국제기구(Codex, WHO, FAO) 등에서도 모든 식품에 해썹를 적용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수출 시 현지 바이어가 HACCP 인증을 요구하기도 하는 등 식품 수출과 관련한 주요 인증으로 자리 잡았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www.haccp.or.kr)에서 인증 담당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 농수산품, 축산 관련 식품 등의 제품을 수출하는데 필요한 검역 및 인증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농림축산검역본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우리 농수산품의 수출과 관련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농림축산 검역본부 http://www.qia.go.kr/listindexWebAction.do
- 농림축산검역본부 인터넷 검역 지원 서비스 https://eminwon.qia.go.kr/intro/tm.js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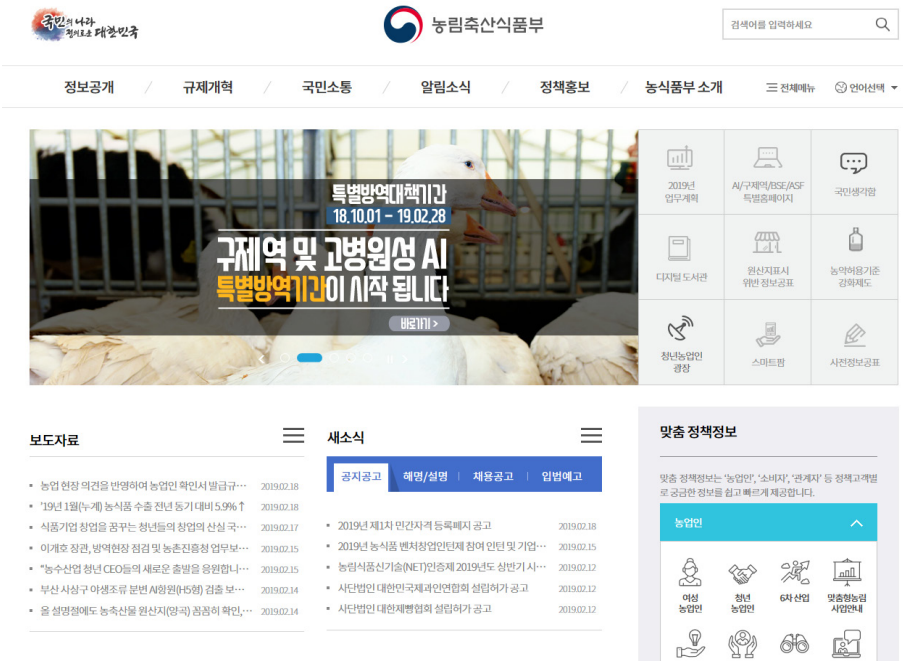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 도매시장육성, 유통교육 및 정보 등 유통조성사업을 강화하고 수출진흥사업과 농수산식품소비촉진사업을 통해 농어민의 소득 증진 및 국민 경제의 균형 발전을 꾀하고 있다.

- KATI(농식품수출정보) www.kati.net : 농식품(채소, 과실/임산물, 신선기타, 가공, 수산물) 관련 최신 뉴스, 국가별 인증 및 규제 정보 제공, 최신 연구자료 및 수출 통계 제공, 지원사업 정보제공
- AT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 http://global.at.or.kr/ : AT에서 제공하는 수출업체 종합지원센터로 우리 농수산식품의 세계진출을 지원하며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이곳에서는 수출 인프라 강화 사업 중 해외 인증제도 등록 지원을 통해 인증 취득 및 연장관련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 해양수산부

수산물의 수출입 및 검역 관련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수산물수출정보포털을 통해 해외 수산물의 위생 검역 정보 및 국가별, 품목별 해외 시장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KEI 수산물수출정보포털 http://www.kfishinfo.net/kor/

해소 사례

1. 신규 인증제도로 인한 수출 애로 해소 _ 중국 영유아용 조제분유 등록제도

무공산품도 그렇지만 식품은 각 나라별 기준이 까다로워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하는 품목 중 하나이다. 상품 인증이나 생산업체 등록, 조제법에 따라 심사에도 차이가 있어서 현지 시장의 변화를 잘 알아야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

중국 내 우리나라의 조제분유 시장은 작은 크기가 아니다. 이미 한국에 방문한 중국인들 사이에서도 조미김과 더불어 필수 쇼핑 품목에 있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당연히 현지 판매도 활발한 편인데 이미 우리나라의 N사, M사, L사 등 3개사의 30개 브랜드, 총 98개 제품이 중국에 수출 중이다. 이들 수출 품목은 이미 2014년 당시 CNCA(Certification and Accreditation Administration of People's Republic of China, 중국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 가 현지 실사를 통해 수출작업장 및 성분배합 자료 등을 통한 축산물 유형을 검증하고 등록, 완료한 제품으로 그간 원활하게 수출을 진행해 왔다.

그런데 2015년 9월, '영유아 조제분유 조제법 등록관리방법' 의 시범실시를 통해 분유 조제법 당 한 종류의 제품만 생산 가능하게 하고 배합성분 수도 15개로 제한되었다. 해외 기업의 경우 상품인증, 생산업체 등록, 조제법 등록 등 심사를 통과해야 했고 중국은 이 2016년 1월에 WTO TBT사무국을 통해 '식품안전법' 개정에 따른 '영 · 유아용 조제분유 성분등록 관리 규정(안)' 통보하기에 이르렀다. 상기 규정은 제조사별로 3개 브랜드, 9개 제품에 한하여 성분배합을 인정 하였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제품의 경우 이미 CNCA가 검증한 제품마저도 당시 CFDA (China Food & Drug Administration, 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에 등록하고 동일단계 제품 성분에도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거기다 기업별로 3개 브랜드, 즉 9개 제품에 한하여 성분배합도 등록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TIP: 중국CFDA란? CNCA란?

CFDA(China Food & Drug Administration)는 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의 약자로 특수식품,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에 대한관리감독 책임을 지고 있는 기관으로서 우리나라 식약청과 유사하다. 참고로, 최근 중국의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CFDA의 업무는 신설조직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으로 통합되었다.

CNCA(Certification and Accreditation Administration of People' s Republic of China)는 중국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의 약자로 각종 인증 및 상품 적합성 평가 등의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CNCA 또한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으로 통합되었다.

TIP :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The State Administration for Market Regulation/Supervision, SAMR 또는 SAMS)

중국의 시장 관리 및 감독 기능을 강화할 목적으로 국무원 직속기구로서 탄생한 신설기구. 기존의 공상행정관리총국,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식품약품감독관리 총국의 업무를 통합하면서, 식품안전 및 각종 인증 · 인가 업무도 해당 기관으로 이관되었다. 검역과 관련하여 질량검험검역총국이 폐지되면서 기존의 출입국검역관리 업무가 해관총서로 이전되었다. 이로인해 CFDA의 명칭은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CNCA는 명칭 그대로 사용중이다.

질검총국(AQSIQ) 수출입 제품 검사 · 검역 및 사후관리, TBT · SPS업무 *소속기관: CNCA(인증/적합성), SAC(표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SAMR) 공산품, 농식품, 의약품, 의료기기의 표준 · 인증 · 안전관리 · 사후관리 총괄, 반독점법 집행 등 업무 ▶ 소속기관: CNCA(인증/적합성), SAC(표준), 식품안전위원회, 반독점위원회, 약품감독관리국(NMPA, 신설)
공상총국(SAIC) 온 · 오프라인 제품 유통검사, 개인 · 기업 영업등록 *소속기관: 상표평가심의委(지재권국 이전)	
식약총국(CFDA) 식의약품 · 의료기기 · 화장품 인 · 허가 및 시장 사후관리 *소속기관: 없음	
발개위 · 상무부 · 국무원 가격 및 반독점 규제 *국무원 소속기관: 식품안전委, 반독점委	

〈그림6〉 중국정부조직 개편 – 시장총국(SAMR) 신설

출처 : 국가기술표준원

사실 2013년부터 영유아 조제분유 관련 규제는 점진적으로 강화되고 세밀화 되고 있었다. 강화된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로 분유제조업체당 브랜드 3개, 제품 배합방식은 9개로 제한하는 것, 두 번째로 영유아브랜드는 각각 0~6개월(1단계), 6~12개월(2단계), 12~18개월(3단계) 성장기에 맞춰 3단계로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세 번째로 조제성분에 대하여 보다 명확하고 자세히 기술하도록 변경되었고 마지막으로는 면역력 강화 등 애매한 문구도 사용할 수가 없게 되었다. 다른 것보다도 문제가 되는 것은 첫 번째 규제였다. 회사마다 하나 이상의 브랜드를 축소해야 해서 매출 감소에 직격탄이 될 것이었다. 제품의 수를 통제하는 것은 보기 드물게 심각한 수준의 비관세장벽으로 볼 수 있었다. 유제품 관련 중국 기업을 육성하려는 의도로 본다면, 장기적인 안목보다는 단기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책을 세워야 했다.

이에 우리나라는 협의를 통해 일단 규정 시행을 2018년 1월 1일까지 유예시키고, 규정 시행일 이후 중국 내에서 생산되거나 중국으로 수출되는 영유아 조제분유는 성분배합 등록증서와 더불어 라벨과 설명서에 등록번호를 표기하도록 했다. 다만 2018년 1월 1일 이전에 조제되거나 수출된 제품일 경우 유통 기한이 끝날 때까지 판매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를 확보해서 판로를 마련하고, 2017년 12월까지 L사, N사, H사 등 12개 브랜드 36개 제품 등록을 완료했다. 유통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물량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수출 및 유통하여 브랜드 및 제품 전략을 다시 세울만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에 CFDA 실사 없이 조제분유를 수출할 수 있도록 빠르게 대처, 복잡한 인증과 심의과정을 무난하게 해결할 수 있었다.

TIP: 조제분유 라벨변경신청 제도

2018년 1월1일 부로 영유아 조제분유 조제방법 등록관리방법에 대한 공고가 발효되었다.
이에 따르면, 아래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라벨 변경신청이 필요하다.

- 제품명(产品名称变化的)
- 기업명, 생산지 주소(企业名称′ 生产地址名称变化的)
- 성분 및 영양소 목록(配料表′ 营养成分表变化的)
- 식품안전국가기준이 허용한 함량(食品安全国家标准允许的含量声称变化的)
- 등록상표, 그래픽, 제품표준코드, 인증항목(注册商标′ 图形′ 产品标准代号′ 认证项目发生变化的)
- 기타(其他涉及产品配方注册一致性的内容变化的)

이외 생산일자, 품질보증기간, 사용방법, 원재료의 원산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 변경신청 없이 라벨 변경이 가능하다.

2. 지나치게 가혹한 위생기준의 적절한 변경 _ 중국 조미김, 젓갈 위생기준

먹거리의 기준은 어느 나라나 까다롭다. 자국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때로는 식품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과도한 위생기준이 적용되어 무역에 애로 사항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럴 때는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애로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 식품 수출에 있어 인기 효자 품목인 조미김과 젓갈은 흔히 말하는 장기보관 식품들이다. 조미김의 경우는 완전하게 마른 김을 구운 후 소금까지 뿌려 만든 것이고 젓갈은 소금으로 절인 고염도의 염장 식품이기 때문에 쉽게 변질되지 않는 먹거리들이다. 때문에 수출 시에도 별도의 세균수 기준에 적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위생기준과 부합되지 않아 수출에 애로가 발생했다.

중국이 조미김에 자국의 해조류 및 해조류가공품 위생기준을 적용시킨 것이 첫 번째 애로사항 발생요건이었다. 중국의 위생기준으로는 세균수가 30,000cfu/g 이하 (2017년 6월 23일 이전) 여야 했는데 우리나라 조미김에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85건의 세균수 부적합 판정이 나온 것이다. 이는 약 35톤의 물량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출업체로서는 큰 손해가 아닐 수 없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조미김은 비살균 고체 식품이기 때문에 애초에 세균수 기준을 세우는 설정 자체가 불필요한 제품이다. 참고로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EU는 조미김에 대한 세균수 기준이 없다.

젓갈도 마찬가지였다. 중국이 적용한 수산조미식품의 위생기준은 2015년 5월 24일 이전 기준으로 세균수: 8,000 cfu/g 이하였는데 젓갈이라는 식품 자체가 원래 발효식품이라 원료 유래의 세균이 존재하는 음식이다. 때문에 이 역시 세균수의 기준 적용이 불필요한 음식이다.

이에 우리나라는 한중식품기준전문가협의회 및 한중식품안전협력위원회, 한중 FTA 이행 채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합의에 나섰고 그 결과 중국 식품안전국가표준을 개정하여 세균수 기준을 완화하는 성과를 얻어냈다.
덕분에 수출업체들이 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수출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시장 확대 역시 꾀할 수 있게 되었다.

구분	기준	개선
조미김 (시행: 17.6.23)	일반세균수 30,000cfu/g 이하	5개중 2개까지 30,000~100,000/g 이하 허용 ※ 1개라도 100,000/g 초과시 부적합
젓갈 (시행: 15.5.24)	일반세균수 8,000cfu/g 이하	5개중 2개까지 10,000~100,000/g 이하 허용 ※ 1개라도 100,000/g 초과시 부적합

3. 신규 규제에 대한 체계적 준비 _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 시행

제도가 한 번에 정리되어 바뀌면 오히려 응대하기가 수월하다. 문제는 조금씩, 오랜 시간에 걸쳐 미묘하게 변하는 것. 이럴 경우 관련 기업들은 준수사항과 시행일 파악이 어려워 결국 심각한 애로상황을 겪게 된다.

2011년, 미국은 식품안전에 대한 규제 강화를 위해 식품안전현대화법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식품안전현대화법은 사람이나 동물이 먹는 식품에 대해 현대식 제조공정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즉 체계적인 공정으로 식품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문제를 예방하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가공식품이 아닌 농수산물 수출품이었다.

식품안전현대화법(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 FSMA)에 따르면 식품 생산의 관리, 감독, 식품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위험 파악, 문제 발생 예방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모두 생산 및 제조업체가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게다가 주요 시행령이 7가지에 달하고 이 시행령 밑으로 세부 규정이 자잘하게 마련되어 있어서 한 번에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차라리 한 번에 정리되어 발표되면 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지만, 이 사소한 시행령과 세부 규정들이 몇 년에 걸쳐 발효된다는 것도 문제였다. 때문에 국내 농산물 및 식품제조업체들은 실사 진행에 대한 부담 뿐 아니라 안정성 검증에 대한 의무부담 확대를 떠안게 된 것은 물론 바뀌어가는 법령을 하나하나 찾아 적용해야 하는 애로사항을 겪게 되었다.

이러한 법령이 시행되는 경우, 가장 난감한 것은 기존에 진출하였거나 수출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다시 해외공급자를 검증하는 경우이다. 이를 해외공급업체 검증제도(FSVP)라 하는데, 이는 마치 최초 검증에 응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검증에 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와 같다.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제2차 한-미 FTA SPS 위원회('15.12) 및 미 FDA와의 화상회의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의견을 십분 반영하여 조치를 했다. 특정 수입자를 통해 검증된 우리나라 공급자(미국입장에서는 해외공급자)에 대해서 타 수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검증받지 않도록 기

존 검증을 갈음하여 면제해주도록 한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한 절차라고 여겨질 수는 있으나, SPS 특성상 보수적인 행정절차로 인해 충분히 중복 검증이 진행될 수도 있는 과정에서 미리 적절한 사전조치를 끌어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더하여, 방대한 분량인 식품안전현대화법의 하위규칙을 정리하고, 각종 규정과 면제조항 안내서를 배포하였다. 해당 하위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식품의 우수제조관리기준, 위해요인 분석, 위해기반 예방관리.
두 번째, 농산물의 재배 및 수확, 포장, 보관에 관한 기준.
세 번째, 식품 및 사료 수입업자에 대한 해외 공급업체 검증 제도.
네 번째, 제3자 검사, 인증기관의 승인. 다섯 번 째 식품의 의도적 변질을 예방하기 위한 완화전략.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품(및 사료)의 운송위생이다.

이에 우리나라는 식품안전현대화법의 하위규칙 절차를 개선해서 검증절차를 완화했다. 이를 통해 이미 미국의 검증프로그램을 통해 검증된 수출업체의 경우 다른 수입업자의 검증절차는 면제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각종 교육프로그램 자료 제공을 FSMA에 요구함으로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 생산자와 수출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물론 한국 식품의 안정성을 알리는 계기로 삼아 보다 많은 기업들이 대미 수출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미 FDA 새로운 영양분석표 디자인 및 표기법

자료원: FDA 및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번역

TIP: FSMA란?

식품안전현대화법(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 FSMA)은 미국정부가 식품오염에 대한 현장대응중심의 식품안전관리체계를 예방중심의 안전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이다.식품안전현대화법은 식품과 식품이외의 규정으로 크게 구분될 수 있는데, 각 분야별로 특정 계획, 기준을 요구하거나 검사 또는 안전기준 검증 등을 요구한다. 이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구분	구분	요구내용
식품	식품 예방관리	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위해요소분 석 및 최소화 방안 등을 보여주는 문서화된 식품 안전계획을 요구
	동물사료 예방관리	동물사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현형 모 범 제 조 관 행 (C u r re n t G o o d Manu-facturing Practices) 기준을 수립 해 각 업체들의 준수를 요구
	농산물 안전성	농산물 재배, 수확, 포장 및 보관에 대한 과학적 기반의 안전성 기준을 수립
식품 외	수입식품안전검증	수입업체에게 해외 공급업체가 미국 내 생산되는 식품과 동일한 안전성 기준을 적용해 생산하고 있는지 입증을 요구
	제3자 인증	식품안전 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제3자 인증기관을 통해 해외식품 시설이 FDA의 식품 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 검사 및 인증
	위생적 운송	식품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식품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위생적인 방법을 요구
	고의적 식품변조	공공보건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국내 · 외 식품업체들을 대상으로 생산시설을 검토하고 자체 취약성 평가 등을 실시하도록 요구

각 분야별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의 종류나 수준이 다르므로, AT센터 또는 KOTRA 측에 대응 매뉴얼을 문의하여 준비할 것을 권한다.

- AT센터 문의처 : 수출정보 콜센터 1670-1191/02-6300-1119 (홈페이지 global.at.or.kr)
- KOTRA 문의처 : 종합상담센터 1600-7119 (홈페이지 www.kotra.or.kr)

4. 현지 법령에 대한 부족한 준비로 인한 피해 _ FDA 사전 신고(Prior Notice) 제도

미국 식품안전 관리체계의 정비는 자국 내 식품 안전 관련 사건 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책이었지만 미국으로 수출을 하는 업체들에게는 다양한 애로사항의 근원이기도 했다. 특히 발송 전후로 제도가 변경될 경우 피치 못할 애로가 생기기도 한다.

식품안전현대화법이 제정된 이후 미국으로 수출하는 식품이 갖춰야 할 조건은 좀 더 까다로워졌다. FDA에 수출 기업으로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물품 수출 이전에 사전 신고(Prior Notice of Imported Food Shipments)를 해야 한다.

이러한 사전신고는 물품정보, 제조자, 발송자(수출자), 재배자(아는 경우에 한함), 원산지, 선적국가, 예상 도착항, 도착 일시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데, 물품 도착 예정일 5일 전까지 신고가 돼야 한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물품 통관이 불허되고 정확한 신고가 될 때까지 도착지 또는 제3의 창고에서 억류된다. 제3의 창고 등지로 운송하는 비용 및 창고보관료 등의 부담도 추가적으로 발생한다.

사전 신고의 경우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통관 브로커나 운송업자, 수입업자들이 맡아서 하기 때문에 특별한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FDA 자체에 등록하고 증명하는 과정이 까다로워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미국으로 소금을 수출하는 K업체는 한참 식품안전현대화법이 제정되어 실행되려는 찰나와 수출이 겹쳐 본의 아닌 애로사항을 겪게 된 사례이다. KOTRA의 시카고무역관이 주최한 수출상담회를 통해 미국의 대형 식품재료 납품 기업과 연결된 것까지는 수출의 호재였다. 이후 샘플 발송을 하고 1년도 되지 않아 첫 주문을 받았다. 앞으로 국내 뿐 아니라 미국 수출의 길까지 탄탄대로로 갈 수 있을거라 예상했던 그 때, 문제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발생했다. 바로 FDA에 사전 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때문에 미국 납품업체는 애써 받은 물건을 폐기해야 했고, FDA에 신고 후 물건을 다시 받기 위한 발송 비용과 물품 비용 등을 부담해야 했다. 이에 KOTRA 시카고무역관은 수출상담회를 통해 인연을 맺은 K업체의 상황을 듣고 적극적으로 소통에 나서며 애로를 해결하기 시작했다. 특히 영어로 진행되는 FDA 신고 절차를 지원하고 미국 내 업체의 주문을 다시 받을 수 있게끔 했다. 이렇게 중간 가교 역할을 KOTRA가 수행해준 덕에 K업체는 미국 시장 진출 첫 단계인 최초 P.O(Purchase Order)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TIP: FDA 수입경보(Import Alert)제도

미국 FDA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각종 수입식품에 대하여 위험성이 있거나 법규를 위반할 만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수입품에 대해서는 법적 위반 여부를 검사할 필요 없이 수입을 거절 및 구류할 수 있다. 이를 수입경보제도라고 말한다.

각 국가별로 수입경보제도 식품 종류는 아래의 FDA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accessdata.fda.gov/cms_ia/countrylist.html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살모넬라, 농약 등이 검출되거나, HACCP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해산물 등이 그 대상이다.

5. 부당한 검사 요구에 대한 적절한 대응 _ 중국 증류주 가소제 검사성적서

수출 시에 추가되는 검사들이 늘어나서 통관이 지연되게 되면 물류비 증가뿐만 아니라 검사 비용까지 이중으로 부과되어 손해가 막심해진다. 이러한 검사들이 자국 제품의 불량으로 야기된 것이라면 더욱 그렇다. 책임 소재 확인으로 불필요한 과정을 줄이면 수출이 한결 편안해진다.

2012년 11월 20일 중국 언론에서 백주제품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프탈레이트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사용되는 화학 첨가제인데 특히 폴리염화비닐인 PVC를 부드럽게 하려고 쓰는 첨가제이다. 하지만 2005년 이후 발암을 일으키는 환경호르몬 추정물질로 구분되어 사용이 금지되었다. 이 중 DBP라고 불리는 디푸틸프탈레이트가 술에서 발견된 것인데 중국식품안전당국이 규정한 기준치보다 무려 2.6배 이상이 높게 검출된 것이다.

이에 중국 당국은 자국 내의 백주 제품에 대해 가소제 검사를 실시하면서 우리나라 증류주인 소주 등을 수입할 때 지속적으로 가소제 검사 성적서를 요구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2012년 11월에 검사를 실시해서 2013년 8월에 검사를 종료한 상태였고 주류에서 가소제가 검출된 것은 중국이 원행위자였기에 해당 사항이 없었다.

이에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제출 요구 철회를 요청했고 결국 2016년 7월 26일, 한중 식품안전협력위원회(식약처-AQSIQ)를 통해 중국 수출 증류주의 가소제 검사성적서 별도 제출의무 면제에 대한 협의를 완료했다.

만약에 중국의 요청을 수용, 성적서 제출을 해야 했다면 국내 기업이 수출할 때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이 더 걸리는 것은 물론 물류비와 검사비용까지 부당하게 부담해야 했을 것이다. 이러한 애로를 빠른 대처로 협의하여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사례였다.

중국 내에서 식품 등과 관련하여 위생이슈가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 기업이 이미 신속히 대응을 완료했음에도, 중국정부에서 지속적으로 관련 검사나 문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식약처, KOTRA를 활용하여 정부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이슈는 특정 제품 혹은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전 제품 및 전 제조사나 수출자를 대상으로 규제되기 때문에 단순 클레임으로 대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TIP: 중국 주류 수입시 주의사항

중국에서 발효주를 수입할 때에는 식품첨가물이 미량 수준으로 각 일정량 허용 수치가 지정되어 있다. 이 중에서 와인류에 간혹 나타날 수 있는 사이클리민산 나트륨, 사이클리민산 칼슘, 안식향산은 금지되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4 통관

- 애로 유형
- 지원 내용
- 해소 사례

애로 유형

해외통관애로는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로 수출하면서 관세 · 비관세 장벽 등으로 외국 세관에서의 통관과 관련된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말한다.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수출활동과 직결되는 해외통관애로를 적극적으로 발굴, 해결함으로써 물류 비용을 절감하고, 신흥 수출시장을 확대하는 등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나가고 있다.

▶ 해외통관애로 현황

(단위 : 건수)

구 분	2016년	2017년	증감	전년대비
해소 건수	214	241	27	112.6%
비용절감액	546억원	741억원	195억원	135.7%

▶ 유형별 실적(2017년)

(단위 : 건수, 백만원)

구 분	해소건수	해소금액
FTA 분야	190	19,965
통관절차 등	26	5,080
품 목 분 류	5	8,859
기 타	20	40,285
합 계	241	74,189

▶ 국가별 실적(2017년)

(단위 : 건수)

구 분	중국	베트남	인니	인도	태국	미국	EU	기타	합계
접 수	166	23	18	12	9	6	5	24	263
해 소	154	21	16	9	9	6	5	21	241

2017년 통계를 살펴보면 애로사항 263건 중 FTA원산지에 관련된 것이 203건으로 가장 많았고 통관절차가 27건, 품목분류는 13건이었다. 통관 애로 국가 비중은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순이었고 이 중 중국의 경우는 2015년 말 한중 FTA가 발효함에 따라 원산지 관련 통관애로가 일시적으로 급증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애로유형으로는 품목분류, 원산지증명, 통관절차 등이 있다.

애로 유형	내 용
품목 분류	– 품목분류에 따라 상이한 관세율 체계에서는 관세 부담과 직결 – HS코드에 따라 원산지 결정기준이 변경 – 국가별로 상이한 품목분류 정책
원산지 증명	– FTA 활용을 위해 수출업자는 해당품목의 원산지 증명을 발급이 필수 – 원산지 서류 미인정 등 행정상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
통관절차	– 전산시스템이 낙후되어 빈번한 장애가 발생 – 국가 간 제도 및 절차적 상이성으로 인해 대응이 어려움

TIP: HS코드

국가간 상품 교류시 국제적으로 상품 분류를 위해 부여하는 코드이다. Harmonized System code 의 약자이다. 모든 상품에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국제적 상품분류체계로 7~10번째 숫자는 각 나라에서 세분화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6번째 숫자까지는 국제적으로 동일하다. 특정 제품에 어떤 코드를 부여하는가는 수입국이 결정되는데 이 코드에 따라 관세가 달라진다. 통관애로의 품목분류 애로는 대부분 이 HS코드가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관세율에 의해 발생한다.

지원내용

▶ 해외통관애로 접수 및 해소 절차

① 해외통관애로 접수 및 발굴

- 국내 : 관세청(국제협력팀, 관세평가분류원,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수출관련 유관기관
- 해외 : 관세관, 재외공관, KOTRA, 현지 진출기업 등

② 대응방안 마련

- 전담조직을 통해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해결방안을 제시

③ 해소 활동

- 청장회의 개최, 관세관 활동 등을 통해 해외통관애로 해소 적극 지원
  - 현지 관세당국 협의, 관세청장 회의 개최, 품목분류 등 주요안건 국제관세기구(WCO) 의제화, 신속지원팀 파견 및 현지설명회 개최

④ 사후관리 및 예방활동

- 해외통관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요 해소사례집을 발간 · 배포

▶ 해외통관지원센터 운영

관세청에서는 우리나라와 교역활동이 활발한 미국, EU, 중국(북경, 상해, 청도, 대련, 홍콩), 일본,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7개국에 12명의 관세관을 파견했다. 이를 통해 해외에서 발생하는 우리나라 수출업체의 통관관련 애로사항의 해소 및 해외통관 민원상담, 해외통관정보의 수집 · 전파, 해외 관세정책 동향 및 자료수집, 불법 · 불공정 무역행위에 관한 해외조사 및 정보수집, 우리나라 통관제도에 관한 해외민원안내 및 홍보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다.

[조직도]

TIP: 통관 관련 참조 사이트

관세청 해외통관지원센터 (http://www.customs.go.kr/kcshome/site/index.do?layoutSiteId=foreign)
우리 기업의 해외통관 지원을 위한 국가별 통관정보, 해외관세동향, 외국 관세청 등 기관 홈페이지 및 연락처를 제공하고 있다.

관세청 FTA 포털, YES FTA (http://www.customs.go.kr/kcshome/site/index.do?layoutSiteId=ftaportalkor)
FTA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관세청 FTA 포털 사이트로써 원산지 검증, FTA 자료실, 원산지 발급 정보, FTA인증상담센터,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및 FTA기동대 등을 운영하고 있다.

세계 HS정보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대한민국 관세율 정보, 해외 관세율정보, 해외 품목분류 사례(법령)정보 등 세계 53개국, 약 78만건의 해외품목사례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해소 사례

1. 관세폭탄을 막은 민관공조 _ 중국에서 160억 원을 절약한 L사

수출국의 정책이 바뀌면 수출을 해야 하는 업체는 일차적으로 당황하기 마련이다. 게다가 바뀐 정책에 의해 어마어마한 비용이 추가로 들어야 한다면 더더욱 그렇다. 이럴 때는 단순히 기업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이 아닌 민관공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애로사항을 해소해야 한다.

2018년 3월 13일. 국내 전자업계와 관세청, 기획재정부와 주중한국대사관이 쾌재를 부른 날이다. 바로 2년에 걸친 공방 끝에 큰 결실을 얻은 날이기 때문이다.

2016년, 중국 광저우 정부는 국내 기업인 L사가 수출하는 모듈 장비에 8%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통보를 했다. 게다가 3년 전 것까지 소급 적용하여 세금을 추징하겠다는 청천벽력같은 선언도 함께였다. 만약 이 통보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해당 장비를 수출할 때마다 8%의 관세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참이었다. 게다가 3년 소급적용한 비용인 160억 원이라는 막대한 비용까지 내야했다.

중국 광저우 정부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한 장비는 액정표시장치 모듈 생산을 위한 핵심 장비인 탭 본딩(TAB Bonding)이다. 탭 본딩은 그동안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로 분류되어 무관세 혜택을 받아왔다.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는 반도체, 통신장비 등 IT제품/부품 및 IT제조장비와 함께 WTO 정보기술협정(ITA,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런데 갑자기 기존의 무관세 혜택 장비가 아닌 '전기식 용접 장비'로 분류된다며 관세 부과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었다. 탭 본딩 장비는 LCD모듈공정에서 패널 상판과 하판 사이에 전기를 통하게 하기 위해 집적회로가 붙어있는 필름을 고온 · 고압으로 결합(bonding)하는 장비인데, 중국 광저우 정부에서는 고온 · 고압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용접 장비의 일종으로 본 것이다.
이에 L사 광저우 법인이 품목분류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결국 기획재정부와 관세청까지 합세, 주중한국대사관을 통해 공식 이의를 제기했다. 본 물품이 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이며, 실제 수행하는 기능 또한 디스플레이 제조공정 중 하나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으나, 광저우 정부는 완강했다.

다행히 2016년 관세청에서 개최한 아시아 주요국 품목분류 세미나 자리에서 탭 본딩 장비의 기능과 용도, 작동원리 등을 다시 한 번 소상히 설명했고, 중국 당국자는 품목분류의 이견의 여지가 있음을 인정했다. 이후 WTO 산하기구인 WCO 품목분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그 결과를 따르기로 합의했다. WCO 품목분류위원회는 무역에서 양국 또는 다국가 간에 품목분류 이견이 있는 경우에 WTO회원국의 각 위원들이 해당 이견이 발생된 국가의 의견을 듣고 투표를 통해 품목분류 결정하는 방식을 취한다. 그러므로 국가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할 수 밖에 없고, L사-기재부-관세청으로 구성된 한국팀에겐 불리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안건 상정이 2017년9월이었으나 1년이 넘도록 최종 결정이 되지 않자, WCO측으로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요청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관련산업의 동영상까지 제작하여 시연하며, 품목분류 근거를 설명하는 성의를 보였다. 결국, 참석 위원 수 총 44명 중 32명가 찬성표로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단순히 기업차원에서 대응했다면, 설득하기 어려웠을 사안이지만, 기재부와 관세청 담당자가 함께 TF를 구성하여 WCO까지 가서 외국의 WCO 위원들을 설득시켜낸 것이 주요한 성공 포인트였다.

이에 L사는 통상위기를 벗어났을 뿐 아니라 추후, 다른 기업들이 진출할 때도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좋은 선례를 만들게 되었다.

2. 정확한 HS 코드 분류로 인한 피해구제 _ 인도 품목분류 분쟁해결

HS코드는 무역세계에서는 만능키이자 양날의 검이다. 대외 무역 상품을 숫자 코드로 분류해서 상품 분류 체계를 통일함으로써 무역의 문을 원활하게 여는 열쇠가 되는가하면 국가별 해석에 따라 수출입국간에 날 선 신경전이 벌어지게끔 만들기도 한다.

차량용 시트 및 부품을 수출하는 D사는 30년이 넘은 탄탄한 중견 제조기업이다. 그 동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동차 회사의 협력업체로 명성을 쌓아왔고 각종 납품 과정에서도 큰 마찰 없이 건실하게 운영해왔다.

그래서 인도에서 날아온 HS코드 품목분류 오류 지적에 적잖이 당황했다. 평소와 똑같이 수입신고서와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해서 제출했고 그 동안 한 번도 문제 된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첸나이 세관에 따르면 D사가 그동안 수출했던 차량용 고정 장치는 '차량용 부분품' 이기 때문에 6.9%의 관세율이 부과되어야 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차량용 고정 장치가 의자부분품이기 때문에 3.1%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거의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 셈이다. 때문에 이미 일정 거래 가격으로 계약 체결된 물품을 공급해야 하는 D사 입장에서는 추가 관세를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수입국인 인도 세관이 관세율이 높은 코드를 적용함에 따라 통관애로가 발생한 것이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된 이유는 차량용 시트의 품목분류에 숨어 있다. 차량용 시트는 그 형태와 기능적으로 차량용 부분품(HS 8708)으로 인식되기 쉽지만, 모든 의자류는 제94류에 분류하는 HS규정에 따라 HS 9401호에 분류한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용 시트 고정장치가 차량용의 부분품 혹은 부속품인지, 의자류의 부분품인지에 대해 이견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차량용 시트는 HS 9401호에 해당하는 것이며, 차량용 시트의 부분품은 HS 9401.80에 해당된다. 인도 체나이 세관에서 이러한 분류 특성을 간파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기한 문제라는 것이 관세청의 생각이었다.

이에 한국 관세청은 D사의 제품 용도와 특징을 분석해서 분류의견서를 만들었다. 체계적으로 정리된 의견서를 바탕으로 인도 관세청과 끈질기게 협의한 결과 결국 D사 제품은 '차량용 의자 부분품'으로 분리되어 3.1%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D사 뿐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이 언제든 당면할 수 있는 문제이다. 특히 WCO 국제협약에 의거, HS 6단위까지 공통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실에서는 국가 간 의견 차이로 인해 종종 분쟁이 일어나곤 한다. 때문에 D사의 경우처럼 좋은 선례를 이끌어내는 것은 직면한 문제 해결 뿐 아니라 향후 다른 기업의 애로를 미리 예방하는 데 있어서도 좋은 디딤돌이 된다.

3. 수출기업의 든든한 파트너가 된 관세청 _ 한-EU FTA 원산지신고서 전자서명

무역 환경이 점점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있는 통관 환경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이 부담하는 추가비용과 리스크는 꽤 높은 편이라 이를 조금만 줄여주어도 기업 입장에서는 한결 수월한 무역을 할 수 있게 된다.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외국에 수출 계약된 물품을 통관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통관 절차 뿐만 아니라 FTA 협정상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이하 C/O, Certificate of Origin)를 준비해야 하는 등 점점 높아지고 있는 통관환경으로 인해 여러가지 어려움이 수시로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통관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로 인해 기업이 부담하는 추가 비용과 리스크는 상당히 높다.

최근 이탈리아로 신규 출시한 자동차를 수출하기 시작한 A기업은 좀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한-EU FTA 원산지증명과 관련하여 이탈리아 세관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최근 모델이 바뀐 SUV차량을 이탈리아로 수출했는데 여기서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말았다.

FTA 원산지신고서에 수출자의 서명을 전자로 작성하여 송부했는데, 이탈리아 리보노 세관이 FTA 원산지신고서 상에 수기 서명이 없다고 원산지 인증수출자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한 것이다. 그리고 A사가 제출한 원산지신고서 인정을 거부했다.

사실 한-EU FTA 협정 제16조 5항에 따르면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서면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서명을 생략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수출건을 위해 특혜관세를 받으려고 관련서류 준비에 만전을 기했기에 A사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에서 발생한 문제라 이탈리아 세관과의 접촉 및 대응 자체가 매우 어려웠다. 몇 번이나 다시 문의를 해봤지만 해결점은 보이지 않았다. 전자 서명이 아닌 수기 서명만을 인정하는 관행 때문에 더 이상은 설득이 어려워 보였다.

차일피일 미뤄진 원산지신고서 불인정 때문에 통관지연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납품기한이 촉박한 상태에서 현지 주문고객에게 당초 정한 기한 내에 물품을 인도하지 못할 수도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이 다가왔다. 게다가 한-EU FTA 협정세율 적용 대상임에도 원산지증명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상태여서 최악의 경우 추가적인 관세부담까지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다급한 마음에 A사는 관할세관인 인천세관에 문을 두드렸다. 자초지종을 들은 인천세관 담당자는 이탈리아 세관과 논란이 있는 FTA 규정의 해석과 원산지증명에 대한 설명 및 근거규정 등을 논리적으로 정리했다. 그리고 정리된 문서를 이탈리아 세관에 영문레터로 작성하여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었다.

그 결과 이탈리아 세관은 수출자가 원산지 인증수출자임을 확인하고 수기 서명 없는 원산지신고서를 인정하여 10% 관세 특혜를 적용하여 통관을 허락했다.

이에 A사는 8억 원에 달하는 관세를 절감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추후에도 연간 260억 이상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A사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준 관세청의 지원이 없었으면 막대한 손해는 물론, 향후 무역에도 지장이 발생할 뻔 했다며 이후에도 관세에 관한 이슈가 발생하면 곧장 세관 담당자에게 문의하고 있다. 무역에서의 관세애로를 해결하는 든든한 파트너를 얻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4. 통관 시스템 지연으로 인한 애로 해소 _ 폴란드 통관절차 지연 해소

통관에 있어 빠른 진행은 곧 비용과 직결된다. 물건이 제때 반출되지 않으면 이에 연관된 수 많은 절차들이 덩달아 늦어지고 이는 곧 생산 차질이나 수급 차질 등을 불러와 비용을 발생시키는 까닭이다. 뿐만 아니라 늦어지는 통관 때문에 상대국의 거래처와 신뢰를 잃게 되면 당장의 손실보다 더 큰 손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통관절차 지연은 상당히 심각한 애로사항이다.

동유럽 국가인 폴란드는 경제적으로는 발전한 나라에 속하고 우리나라와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폴란드가 이미 우리나라를 주요 경제.통상 협력 대상국으로 간주해 우리나라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진출을 유도해 온 까닭이다. 이러한 지원 속에 이미 120개가 넘는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대다수의 대기업은 폴란드 현지에 공장을 가동시키고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와 폴란드의 무역관계는 돈독하다. 하지만 무역이 빈번해짐에 따라 안타깝게도 통관애로 문제가 더 자주 발생하는 나라이기도 하다.

J사는 LCD모듈을 생산하는 업체이다. OLED제조 기술을 가지고 폴란드를 관문으로 삼아 유럽 시장 점유를 꾀하고 있는 도중, 폴란드 통관에서 애로가 발생했다. 이미 치열하기 이루 말할 수 없는 유럽의 대형 TV시장에서는 무엇보다 납기일 준수가 중요한데 통관이 지연되면서 자그마치 10만대에 이르는 TV의 생산이 차질을 빚게 되었다. 이 경우 420억에 달하는 매출 손실은 물론 물류 및 거래처 신뢰까지 잃을 수 있는 진퇴양난의 위기에서 J사는 관세청의 문을 두드렸다.

이에 관세청은 현황을 먼저 파악하기 시작했다. 당시 배가 아닌 열차를 통해 수송을 진행하고 있던 J사의 물건이 말라셰비치 세관에서 운송장을 받지 못해 대기하게 된 것이 시작이었다.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산시스템의 불안, 주말 연휴, 대기 물량에 따른 적체, 국경일까지 여러 악재가 겹쳐 보름에 가까운 시간을 허송세월하고 만 것이었다.

더 이상 미뤄지면 정말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관세청 담당자는 말라세비치 세관에 직접 연락을 취해 J사의 문제를 전달하고 폴란드 관세청장까지 이 사안이 보고될 수 있도록 처리했다. 더불어 유럽 연합 관세관을 활용해서 폴란드 주 EU관세관의 협조를 요청하며 다각도로 해결을 꾀한 결과 애로발생 3주 만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특히 우리나라 관세청의 요청으로 말라세비치 세관은 전산이 아닌 수작업으로 통관절차를 진행하는 파격적인 협조를 해주었고 이후에는 전산을 통한 정상통관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었다.

J사의 애로발생을 해결한 관세청은 말라세비치 세관이 가진 문제가 이번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지 않다는 예상을 하고 직접 방문, 향후 통관장벽에 대한 후속조치까지 진행했다. 업체, 관세청, 현지 관세당국이 물 흐르듯 신속하게 협력해서 애로사항 해결을 이끌어 낸 것이다. 이에 유럽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이 겪을 수 있는 통관애로를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5. 애매한 통관절차로 인한 애로 해소 _ 한-아세안 FTA 애로

한-아세안 FTA가 협정,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별로 적용 기준이 애매하거나 다른 것은 오랜 시간 고질적인 무역애로의 한 부분이었다. 이런 경우 국가별 특징과 정서에 맞추어 하나하나 직접 부딪혀 해결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일 수 있다.

캄보디아는 한-아세안 FTA협정국이다. 3차 의정서에 의해 2015년부터 대부분의 적용품목에 대한 양허 관세가 인하되었고 증명서 역시 전자원산지 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미 AKSTROO(Asean-Korea FTA Sub-committee on Tariff and Rules of Origin) 회의에서 수 차례 논의하고 협의한 것과 달리 캄보디아는 국내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전자원산지 증명서가 아닌 발급기관의 수기 도장과 사인을 요구하곤 했다.

이럴 경우 캄보디아 세관에 제출한 원산지 증명서 원본을 다시 국내로 보내 수기로 도장과 사인을 받은 후 캄보디아에 재제출 해야 하고, 만약 발급기관에 수기 도장이 없는 경우는 이미 받은 것을 취소, 다른 기관에서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했다.

이로 인한 통관지연, 비용발생 애로는 물론이고 향후 다른 기업들 역시 불편함을 겪어야 했기에 KOTRA 프놈펜무역관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우선 무역관과 관세청이 수시로 만나면서 애로사항 해결을 캄보디아 관세청 쪽에 요청했고, 대사관, 한국 관세청, 캄보디아 관세청, 우리 기업까지 모인 세미나도 두 번이나 개최하며 애로사항 해결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를 통해 캄보디아 관세청 측에서는 전자원산지 증명서를 인정하게 되었고 기업들은 보다 수월하게 원산지 증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원산지 증명 해결이 애로사항 해결의 전부는 아니었다. 캄보디아의 경우 전자원산지 증명을 받지 않는 것도 문제였지만 자체적으로 부과하는 관세도 애로사항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3차 의정서에 의해 인하된 양허 관세를 초기 양허 관세율로 일괄 적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역시 전자원산지 증명서를 초기에 이행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이유인 '해당하는 국내법이 없다.' 라는 것에 의거한 것이었다. 때문에 0% 적용인 항목도 5%~15%까지 적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으로 수출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현저하게 약화됐다. 이에 우리 기업의 불만도 당연히 높아졌고 FTA 활용 역시 낮아질 수 밖에 없었다.

이에, KOTRA 프놈펜무역관 에서는 역시 캄보디아 관세청과 비정기 미팅을 통해 세부 사항을 조율해 나가면서 관련 세미나를 열어 기업과 국가 정책간의 간극을 좁혀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현재는 한-아세안 FTA 3차 의정서의 양허 관세율을 적용하여 대부분의 적용 품목에 대한 관세율이 5%~15% 감소한 상태이다. 지속적이고 끈질긴 협의와 애로 해결을 위한 대화의 장 마련으로 원산지 증명서 인정 문제와 더불어 양허관세 문제까지도 해결한 것이다.

자유무역협정은 당사국간에 협정이지만, 이를 국내법으로 입법하여 조속히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상 현지에서는 혜택을 볼 수가 없다. 또한 FTA내용이 개정되었는데 이를 국내법에 여전히 반영하고 있지 않는 국가도 마찬가지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러한 경우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KOTRA 또는 관세청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나라별 시스템 차이의 이해가 필요한 무역 _ 통관서류 원본 불인정

무역에 있어 당황스러운 순간 중 하나가 우리나라의 기준과 다른 나라의 기준이 현저하게 다를 때이다. 국내에서 최선을 다해 준비한 서류임에도 타국의 이해를 받지 못하면 그 서류는 더 이상 쓸모가 없다.

식품 수출업체인 B사는 어느 날, 등골이 서늘한 소식을 하나 받았다.
베트남에 수출하는 제품의 품질검사를 위해 제출한 서류인 자유판매증명서와 위생안전증명서의 진위 여부가 의심된다는 연락이었다. 단순히 새로 제출하라든지, 항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아닌 원본 진위가 의심된다며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의 확인까지 요청받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자칫 잘못하면 서류 위조의 오해를 받거나 이로 인해 수출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가 지연되어 기업이 막심한 피해를 입게 될 상황이었다.

이에 B사는 평소에도 종종 자문을 구하곤 했던 KOTRA 하노이무역관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하노이무역관에서는 우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베트남 세관 쪽으로 문의를 했다. 사실 Decree 38/2012/ND-CP 제6조에 따르면, 자유판매증명서와 위생안전증명서의 경우 원본 · 공증사본 · 영사공증사본이 모두 선택적으로 제출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에 영사 공증까지는 필요가 없는 사안이었다. 그리고 한국 식약처의 증명서 발급시스템에서는 두 개 증명서를 동시 신청할 경우 발급번호가 동일하게 나오는데 베트남 보건부에서 이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것이 오해의 시작이었다.

사태를 파악한 하노이무역관은 한국 식약처 홈페이지의 발급문서 진위확인 서비스를 통해 증명서의 진위를 확인해주었고 이를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 진위 확인공문 발송까지 완료했다. 더불어 베트남 보건부에 한국의 식약처 증명서 발급 시스템 및 발급번호 부여 방식에 대해서도 설명을 덧붙였다.

빠른 조치를 통해 B사는 추가 부담없이 통관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었고, 이 일을 계기로 베트남 보건부 역시 한국의 식약처 발급 시스템에 대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5 기타

- 애로 유형
- 지원 사업
- 해소 사례

애로유형

위에서 언급한 무역기술장벽(TBT), 위생검역(SPS), 통관 등의 애로 사례들 외에도 기업들이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수출 진입 장벽은 존재한다. 내국인과 외국인간의 차별대우, 외국인 직원들의 비자 발급 거부, 외국 법인 설립 제한, 지식 재산권 침해 등 현지에서 기업들이 당할 수 있는 문제는 다양하다. 이런 다양한 문제들 역시도 비관세장벽으로 인식하고 우리 정부는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타지에서 이러한 문제를 경험할 경우 당황하여 제대로 된 대응을 하기가 어렵다. 언어적인 문제뿐 아니라 도움 받을 창구를 찾는 것도 난감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현지에 있는 외교부 대사관 및 KOTRA 무역관 그리고 한국의 여러 유관기관과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을 하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사업

KOTRA는 85개국 126개 무역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현지 수출 시 애로사항을 포괄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글로벌 일자리 창출 선도에 앞장서고 있으며 특히 수출 시 발생하는 애로 사항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응대하고 있다. 현지 정부 및 유관기관과 소통하며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움직이고 있다.

10개 지역본부, 126개 해외무역관(85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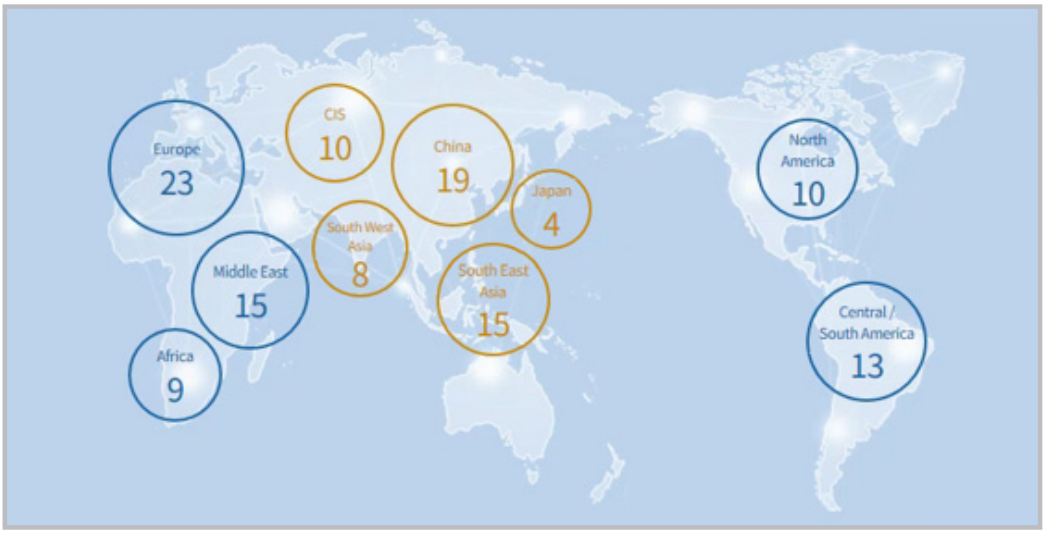

KOTRA 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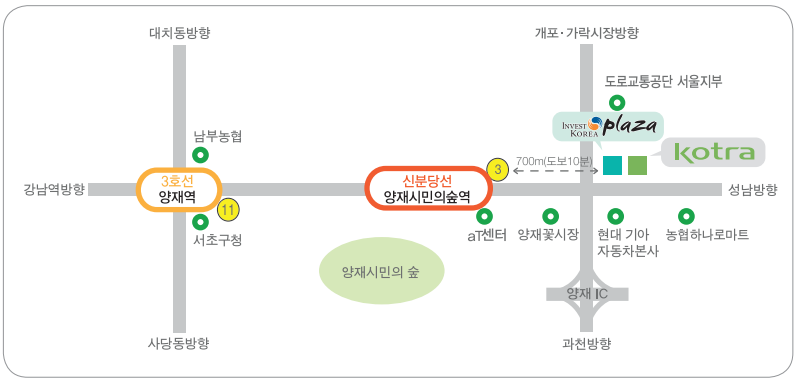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13 / Invest Korea Plaza(IKP) :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7
고객안내센터 : 1600-7119

지방지원단 주소 및 연락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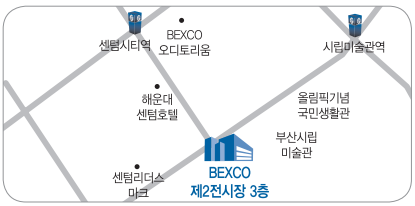

부산KOTRA지원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30 BEXCO 제2전시장 3층 371호 (우)48060
TEL : 051-740-4150~6

대구경북KOTRA지원단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 중소벤처기업청 별관 2층 (우)42724
TEL : 053-659-2526

광주전남KOTRA지원단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우)61928
TEL : 062-369-9052

경기KOTRA지원단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영통동)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1층 (우)16705
TEL : 031-273-603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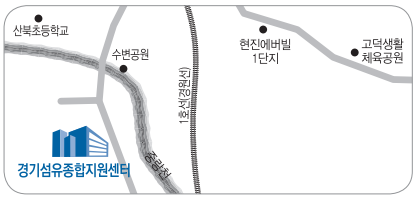

경기북부KOTRA지원단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215(산북동)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310~311호
TEL : 070-7931-0744

인천KOTRA지원단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논현동) (우:21632)
TEL : 032-822-9360~7

대전충남KOTRA지원단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우)34111
TEL : 042-862-8312

강원KOTRA지원단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우)24427
TEL : 033-261-53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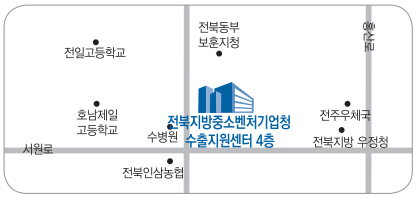

전북KOTRA지원단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효자동 2가) 전북중소벤처기업청 3층
(우)54966 / TEL : 070-7931-0801

울산KOTRA지원단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산업로 915 (우)44248
TEL : 052-289-4651~2

충북KOTRA지원단
충청북도 청주시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우)28119
TEL : 043-217-0016

경남KOTRA지원단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532번길 50 (우)51439
TEL : 055-290-0601~2

상담전화안내

근무시간
월-금 (공휴일 제외) 09:00 ~ 12:00 AM
13:00 ~ 18:00 PM

1600-7119

+

1번	2번	3번	4번	0번
KOTRA 사업안내	수출 및 해외투자 상담	외국인투자 상담	외국인 서비스	직원연결 및 기타안내

2번 수출 및 해외투자 상담
- 1번 - 중국, 홍콩, 대만
- 2번 - 아시아, 대양주
- 3번 - 미주 및 유럽
- 4번 - 중동, 아프리카, CIS
- 5번 - 기타 무역 및 해외투자
- 6번 - 전가전자 및 의료기기 해외 규격 인증 상담

4번 외국인 서비스
- 1번 - 영어
- 2번 - 일본어

0번 직원연결 및 기타안내
- 1번 - 기타 서비스 상담
- 2번 - 직원안내

이용요금안내

- 일반전화를 이용하시는 경우, 시내통화 요금으로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시내, 시외 1대역 - 3분/39원, 시외 2대역 - 13.8원/10초)
- 휴대폰, 인터넷전화를 이용하시는 경우 통신사간 약정요금에 통화요금이 부과됩니다.

해소 사례

1. 부당한 수입제한 극복을 통한 시장 진출 _
희귀병 치료제 수입 관련 부당 안전공지(Comunicado de Seguridad) 철폐

무역을 통한 이권 싸움만큼 치열한 것이 또 있을까.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데 절실하게 사용되는 희귀병 치료제도 이권싸움에서 자유롭지는 못하다. 특히 독과점을 하고 있는 상대가 있을 때는 그 물밑작업이 더 치밀하게 이루어지기 마련이다.

헌터증후군은 세포 내 효소의 결핍으로 뮤코다당이 분해되지 못한 채 세포 내의 리소좀에 축적되면서 생기는 질병이다. 지능 장애, 작은 키, 돌출된 이미와 눈, 두꺼운 입술, 큰 혀 등의 외형적 특징과 더불어 골격 기형도 나타난다. 대부분 유전 질환으로서 남성에게서 주로 나타난다. 중증 환자의 경우 2세 이후에 발병하여 15세 전후로 사망하고 경증환자 역시 다양한 합병증이 나타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희귀한 질병에 속한다. 현재로서는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이 최선일 뿐 완전한 치료법은 없다. 그래서 이를 완화하는 치료제의 경우 제때에 수출입이 이루어져 제공되지 않게 되면 무엇보다 환자들이 고통 받게 된다.

우리나라의 N사는 이 헌터신드롬을 치료하는 희귀병 치료제를 과테말라에 수출하고 있었는데 2016년 2월, 사전 공지도 없이 갑자기 수입 전면 금지 조치를 받게 되었다. 과테말라 당국이 내세운 근거는 임상실험 불충분(4단계 중 2단계 진행 중), 여타 제출서류 미비(우수제조품질관리기준(GMP) · 자유판매증명서(FSC) · 의약품제조판매증명서(CPP) 등이었는데 만약 이 공지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과테말라는 물론 다른 중남미 국가에 수출하는 것까지 타격을 입을 것이 분명했다. 사실 통상적으로 희귀병 치료제는 일반 약품보다는 좀 더 완화된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헌데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만 유달리 까다롭게 일반 의약품 요건을 적용한 것이다.

TIP: 희귀병 치료제

WHO 규정에 희귀병 치료제는 과테말라 관련법령에 따라 특별한 국내 등록절차 없이, 수입허가만 있으면 판매가 가능하다.
이러한 희귀병 치료제는 각 국가별로 지원제도가 다양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허가 절차상 신속한 심사 또는 시험방법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등 안전성 심사와 관련하여 일부 자료 제출을 면제받는 등의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KOTRA 과테말라무역관은 다른 나라 제품과 상이한 조건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의하는 한편, 현재 과테말라로 수출하고 있는 제품이 한국 식약청은 물론 브라질, 베네수엘라 등에서 점유율 7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문제없이 판매되는 제품임을 증명했다.

그리고 안전공지를 발급했던 당시의 공무원이 시장 내 독점사업자인 미국계 기업의 자문역으로 활동한 이력을 밝혀내며 미국 업체를 돕기 위한 부당한 규정적용이 아니냐는 의문을 과테말라 보건 당국에 항의했다. 한 번의 안전공지 해결이 문제가 아니라 향후 비슷한 사례로 한국산 의약품 진출을 방해할 요소가 크다고 판단했기에 지속적인 기준 마련을 촉구하고 해결을 서둘렀던 것이다. 이를 위해 고위급 인사 면담은 물론 한국 외교부를 통한 이슈 만들기, 관련 증거의 확실한 제시 등을 통해 부당조치 철회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할 수 있었다.

2. 특허 침해를 돕는 IP DESK _ 자동차 부품 특허 도용

아이디어를 빼앗긴다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특히 최근 들어 아이디어 하나가 한 기업을 먹여 살리는 기술이 되는 세상에서는 특허 침해가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된다. 특허청과 세관의 협업으로 소중한 아이디어를 지켜낸 사례가 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자동차 부품 전시회에 참여했던 A사는 첫 날부터 황당한 광경과 마주해야 했다. 분명 자신들이 개발해서 특허권까지 획득한 자동차용 와이퍼를 중국의 N사가 떡하니 전시회에 들고 나와 자신들이 개발한 제품인 것처럼 진열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이에 A사는 곧장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의 IP-DESK에 피해사실을 접수했고 IP-DESK는 A사의 제품이 독일 특허 등록을 받은 사항을 확인 후 전시장 내 독일 특허청 부스에 이 사실을 알렸다. 독일 특허청 역시 신고를 받고 A사의 특허 보유 사실을 확인 후에 중국 제품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고, 중국 업체의 전시부스에서 품목 압수를 시행했다. 압수 뿐 아니라 벌금도 부과한 것은 물론이었다.

TIP: TRIPS(Trade Related Intellectual Properties)

특허권, 의장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보호하고, 침해에 따른 구제수단을 구체화한 다자간 규범으로 세계무역기구(WTO)회원국에 모두 적용된다. 지식재산권 외에도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반도체, 집적회로, 영업비밀 등도 보호 대상으로 포함된다.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특허품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보호 받을 수 있는 것은 이 규범을 근간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에 A사는 자칫, 특허 침해를 한 제품과 불미스러운 일을 겪을 뻔 한 사건을 무사히 넘길 수 있었다. 만약 IP-DESK의 신속한 처리가 없었다면 특허는 특허대로 침해당하고 향후 독일 내에서 판매할 때도 계속 애로사항이 생겼을 것이 분명했다. 게다가 동 사건을 통해 중국 업체가 아닌 A사에 해당 특허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림으로서 제품에 대한 아이덴티티도 명확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이 모든 일이 전시장 내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참여했던 다양한 나라의 기업들에게 '한국 기업의 특허 피침해에 대한 대처' 를 확고히 보여주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좋은 선례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KOTRA는 이번 사례를 겪으며 현지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특허, 상표권, 실용신안 등의 지재권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포럼을 개최하는 것은 물론 기업들이 IP-DESK를 적극 활용할 수 있게끔 안내하고 있다.

TIP: KOTRA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사업

KOTRA 해외지재권보호실에서는 8개국 14개소에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설치하여 국내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지원하고 있다.

현지 특허출원비용의 최대 50%를 지원하는(신청기업별 연간 3건 : 국가제한 없음) 특허출원지원, 현지 특허출원비용의 최대 50%를 지원(신청기업별 연간 8건 : 국가제한 없음)하는 상표 디자인 출원 지원이 대표적이다.
또한 침해피침해조사, 행정단속, 법률의견서(경고장, 침해감정서 등) 작성비용의 최대 70%를 지원하는 사업도 하고 있다. 이 경우는 신청 기업별 연간 3건이며 역시 국가 제한은 없다. 지원 대상과 문의는 아래와 같다.

▶ 지원 대상
한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국내 중소 · 중견기업(개인사업자 포함)으로 현지 국가에 사업을 운영(예정)중인 자
1)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중소 · 중견기업의 증빙: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의 중소기업확인서, 중견기업연합회의 중견기업확인서만 인정

▶ 지원방법 및 문의처
(지원방법)
www.kotra.or.kr기업회원 가입 후, 사업안내 ▶ 해외투자진출지원 ▶ 지식재산권 보호 페이지 내 "사업접수" 에서 온라인 신청
(문의처)
본사: KOTRA 해외지재권보호실 IP-DESK 담당 (02-3460-3359, 3357, ip_patent@kotra.or.kr, ip-desk@kotra.or.kr)
해외: 페이지 상단의 사업관련 연락처 내 IP-DESK 현지 담당자 확인

3. 현지 조세 제도와 관련된 지원 _ 투자진출기업 이전가격 고세율 징수

탈세는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절세는 기업 운영의 큰 지혜임이 분명하다. 특히 무역에서는 단 1% 아니 0.1%의 세율 차이도 종국에는 큰 비용 차이가 될 수 있다. 세법의 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세율을 살펴야 하는 이유이다.

무역 용어 중에 '이전가격(Transfer Price)' 이라는 것이 있다. 연관 기업 사이에 원재료, 제품, 용역, 기술을 공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가격인데 보통은 본사와 해외 법인 사이에 체결되는 경우에 주로 사용된다. 법인세부담을 줄이거나 해외법인 이익을 본사로 송금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까닭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수단임에도 불구, 베트남 세무당국이 납득하기 어려운 고세율을 우리나라 기업에게 적용하고 있다는 피해사례가 접수된 적이 있다.

TIP: 이전가격이란?

관련기업 사이에 원재료 · 제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가격을 말한다. 이것은 국제거래에서 발생되는 다국적기업간의 이전가격조작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데, 이때에는 이러한 이전가격을 부인하고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이를 이전가격과세라고 한다.

다국적기업이 이전가격을 조작하는 이유는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에 보다 많은 이익이 발생하도록 하여 당해 그룹전체로 볼 때 법인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세후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tax haven)의 계열기업에 상품을 공급할 때에는 낮은 가격을 책정하고 공급받을 때는 고가로 매입하여 자동적으로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로 이익이 분여되도록 한다.

* 출처 : 이전가격 [transfer price, 移轉價格]

문제는 이 문제 제기가 단순히 한 기업의 애로사항이 아니라는데 있었다. 베트남에 진출했던 우리나라 기업 5개사가 세무 조사에 대한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KOTRA 및 주베트남대사관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들 기업에 따르면 이전가격이 가진 특성상 한국 본사에서 원부자재 등을 베트남 법인에 수출하고 이에 따른 로열티 계약을 체결하는데 과도한 세금으로 한국 기업이 무역장벽에 봉착했다는 것이다. 이에 KOTRA는 주 베트남 대사관, 현지공관, 코참(KORCHAM)의 공동대응반을 꾸려 조세 현황 파악에 나섰다.

그 결과, 이전가격에 대한 조세는 베트남 정부의 의무이자 권리인 것은 맞지만 제대로 된 산정방식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징수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밝혀내고 베트남 정부에 건의할 방향을 결정했다.

베트남 정부는 우리나라 기업이 베트남 법인에 판매하는 원부자재의 이전가격에 본래의 로열티 비율보다 훨씬 높은 비율의 로열티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고가로 원부자재를 수입하여 베트남 법인의 이윤을 최소화 하고 이로 인해 법인세를 고의로 회피한다는 오해를 하고 있었다. 실제로는 우리나라 기업의 판매가에는 로열티 금액이 포함되어 있지도 않을뿐더러, 로열티를 별도로 베트남 지사로부터 송금 받고 있었다. 이러한 로열티의 일부는 원부자재의 기능과 관련이 있어 관세로서 과세하고 있었고 법인세 역시 본래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하고 있었다. 즉 적정한 과세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몇 번의 회의를 한 끝에 제대로 된 공식 서한을 베트남 투자기획부 장관에게 발송했고 세미나 개최를 통해 베트남 관세총국이 제대로 된 원칙에 따라 징수할 것이라는 언급도 받아냈다.

이에 베트남 정부는 세율을 정상화시켰고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로 인해 불공정한 무역장벽의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현지 공관, 유관 기관과 KOTRA 무역관의 협업이 빛을 발한 대응이었다.

4. 인사(人事)가 만사(萬事) _ 외국인근로자 노동허가

모든 일은 사람을 통해 만들어지고 사람을 통해 실행된다. 성심을 다해 일하는 직원 한 명, 지혜롭게 처신하는 관리자 한 사람은 수백대 기계의 몫을 하고도 남는다. 더군다나 해외에서 지사를 운영하고 있는 국내 기업의 경우 현지 인력과 어우러지면서 한국 본사의 방침을 제대로 전달할 믿을 수 있는 관리자가 절실하다.

2013년, 베트남 정부가 발표한 '베트남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시행령' 이 발표되자 현지에 진출해 있던 수많은 국내 기업의 인력 구동에 날벼락이 떨어졌다. 외국인 노동허가증 발급 요건이 강화되어 한국인 관리자 채용이 곤란해진 것이다.
이에 베트남 진출 기업들은 KOTRA 및 한인상공인연합회, 총영사관 등을 통해 채용애로사례를 토로했고 KOTRA 및 다른 기관들을 합동해서 공동대응책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다방면으로 알아본 결과 개정 시행령의 가장 큰 문제는 '전문가 규정' 부분이었다. 기존에는 학사학위 소지자 정도로 되었던 전문가가 '전문분야 5년 이상 근무경력' 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면서 사실상 대졸 신입 한국인은 직원으로 노동허가가 나지 않게 된 것이다.

이러한 베트남 정부의 새로운 시행령에 대해 우리나라 협동 대응반은 현재 발표한 조건은 베트남 경제 발전에 꼭 필요한 우수 외국인 인력 도입을 저해하는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기업들이 인력을 수급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전달했다. 그러면서 노동허가증 발급 요건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끊임없이 설득했다.
약 1년간의 설득과정 끝에 결국 베트남 정부는 정부회의 의결서(47/ND-CP, '14.7.8), 노동보훈사회부 통보서(2779/LDTBXH-VL, '14.8.4)를 통해 외국인 노동허가증 발급 요건을 완화했다. 경력유무에 상관없이 학사학위만 소지하면 노동허가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현지진출기업은 보다 쉽게 한국의 청년인력을 베트남에 데려갈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해외 취업의 기회를 늘리고 불필요한 해외 취업 차별의 벽을 없앤 셈이 되었다. 이는 모두 초기에 빠른 모니터링을 하고 민관협의체를 신속하게 구성하여 대처한 덕분이었다.

별첨. 주요 기관 연락처

<관세청 고객>

기관명(한글)	전화번호	인터넷 홈페이지	관련사항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국번없이 125	https://call.customs.go.kr	관세행정 상담전반
관세청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	1544-1285	http://portal.customs.go.kr	UNI-PASS 관세행정정보시스템
관세청 밀수, 관세탈루 신고	국번없이 125	http://www.customs.go.kr	밀수/관세포탈 마약 불법외환신고
관세청 부정부패신고	국번없이 125	http://www.customs.go.kr	관세행정불만개선건의
관세평가분류원	042-714-7505	http://cvnci.customs.go.kr/	과세환율
관세평가분류원	042-714-7535	http://cvnci.customs.go.kr/	품목분류사전심사(82류~97류)
중앙관세분석소	055-792-7312~5	http://cclss.customs.go.kr	분석 과학기술지원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032-720-7416/7400	http://post.customs.go.kr	국제우편물통관
서울세관 이사화물과	02-510-1189/1187/1184	http://www.customs.go.kr/seoul	이사물품
북부산세관통관지원과	051-793-7131~5	http://www.customs.go.kr/busan	이사물품
인천세관 이사화물과	032-452-3273	http://www.customs.go.kr/incheon	이사물품

<수출입관련 문의기관>

기관명(한글)	전화번호	인터넷 홈페이지	관련사항
한국관세무역개발원	02-3416-5000	http://www.kctdi.or.kr	수출입실적 무역통계표 교부
한국관세물류협회	02-701-1455~8	http://www.kcla.kr	보세사시험 보세운송업자.차량 등록
한국관세사회	02-547-9714~6	http://www.kcba.or.kr	관세사안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600-7119	http://www.kotra.or.kr	외국의 관세율 외국통관제도
한국은행 외환심사팀	02-759-5779/5793/5563	http://www.bok.or.kr	외국환거래법 외환거래상담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국번없이 126	http://call.nts.go.kr	내국세 문의
한국무역협회	1566-5114	http://www.kita.net	무역업체조회 무역상담
특허청(위조상품제보센터)	1666-6464	http://www.brandpolice.go.kr	위조상품신고센터

특허청(고객센터)	1544-8080	http://www.kipo.go.kr	상표등록확인 지식재산권
국제우편물류센터	1588-1300	http://www.koreapost.go.kr	우편물도착확인
전략물자관리원	02-6000-6400/6423	http://www.kosti.or.kr/	전략물자 판정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02-2188-6900	http://www.sw.or.kr	무체물 소프트웨어 수출 실적 처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02-3438-3095	http://www.bohunshop.or.kr	세관물품위탁판매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1577-8863	http://www.komdi.or.kr	위험물 분류 선적허가 등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1566-2119	http://www.ktnet.co.kr	전자통관서비스무역서류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인증팀	02-6050-3324~5/3303	http://www.korcham.net	원산지증명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과	044-203-4044/1577-0900	http://www.motie.go.kr	원산지제도문의
농산물품질관리원	031-446-0124	http://www.naqs.go.kr	농산물원산지표시(농산물품질관리법)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	044-203-4025	http://www.motie.go.kr	대외무역법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인증팀	02-6050-3335	http://www.korcham.net	까르네 발급
환경부 유전자원정보 관리센터	032-590-7343	http://www.abs.go.kr	나고야의정서 유전자원법

'KOTRA' 해외무역관 연락처

중국

무역관명	E-MAIL	대표전화
베이징	jisoo@kotra.or.kr	(86)10-6410-6162
광저우	hbkim@kotra.or.kr	(86)20-2208-1600
난징	sychae@kotra.or.kr	(86)25-8328-8991
다롄	jisoo@kotra.or.kr	(86)411-8253-0051
상하이	DhJang@kotra.or.kr	(86)21-5108-8771
샤먼	jsh@kotra.or.kr	(86)592-210-3190
선양	shuen@kotra.or.kr	(86)24-3137-0770
선전	youngseok@kotra.or.kr	(86)755-8335-9991
시안	ick83@kotra.or.kr	(86)29-8883-1060
우한	ws.choi@kotra.or.kr	(86)27-5930-9299
정저우	seong@kotra.or.kr	(86)371-8616-3927
창사	goldjb@kotra.or.kr	(86)731-8564-0080
청두	dayeon@kotra.or.kr	(86)28-8672-3501
충칭	572park@kotra.or.kr	(86)23-6039-1005
칭다오	gyp@kotra.or.kr	(86)532-8388-7931
타이베이	shoh@kotra.or.kr	(886)2-2725-2324
톈진	sunhye@kotra.or.kr	(86)22-2329-6631
항저우	csj@kotra.or.kr	(86)571-8110-3099
홍콩	ejna@kotra.or.kr	(852)2545-9500

중동

무역관명	E-MAIL	대표전화
두바이	srchoi@kotra.or.kr	(971)4-450-4360
다마스커스(엠만 겸임)	cosmania@kotra.or.kr	(962)6-5831-045
도하	jkim@kotra.or.kr	(974)4016-2603
리야드	shyun@kotra.or.kr	(966)11-273-4496
무스카트	bluesea@kotra.or.kr	(968)2411-7011
바그다드	wisemoon@kotra.or.kr	(964)772-224-4629
알제	choihs@kotra.or.kr	(213)21-69-41-94
이스탄불	ted0711@kotra.or.kr	(90)212-325-3646
카사블랑카	ykryu@kotra.or.kr	(212)660-93-40-30
카이로(트리폴리 겸임)	iamjh@kotra.or.kr	(20)2-2754-5319
쿠웨이트	parksw@kotra.or.kr	(965)2243-6933
테헤란	jyp0711@kotra.or.kr	(98)21-2620-6711
텔아비브	kencho@kotra.or.kr	(972-3)639-6488

유럽

무역관명	E-MAIL	대표전화
프랑크푸르트	bionda8721@kotra.or.kr	(49)69-242-992-20
런던	shjoo@kotra.or.kr	(44)20-7520-5300
마드리드	csshim@kotra.or.kr	(34)91-556-6241
뮌헨	sejung@kotra.or.kr	(49)89-2424-2630
밀라노	ohkiho@kotra.or.kr	(39)2-795-813
바르샤바	jae-il@kotra.or.kr	(48)22-520-6230
베오그라드	bernice@kotra.or.kr	(381)11-311-0860
부다페스트	seyeonlee@kotra.or.kr	(36)1-201-8474
부쿠레슈티	dongminkim@kotra.or.kr	(40)21-233-2171
브라티슬라바	jackbjeong@kotra.or.kr	(421)221-293-450
브뤼셀	yjlee@kotra.or.kr	(32)2-203-2142
빈	cskim@kotra.or.kr	(43)1-586-3876
소피아	youandi@kotra.or.kr	(359)2-969-5030
스톡홀름	crystal@kotra.or.kr	(46)830-8090
아테네	chosun@kotra.or.kr	(30)210-654-3623
암스테르담	happyending@kotra.or.kr	(31)20-754-6193
자그레브	jitaek.yi@kotra.or.kr	(385)1-4815-101
취리히	joo.yongsun@kotra.or.kr	(41)44-202-1232
코펜하겐	kimsh@kotra.or.kr	(45)3312-6658
파리	kyungmi.lee@kotra.or.kr	(33)1-5535-8888
프라하	ey.kim@kotra.or.kr	(420)245-005-656
함부르크	shkim7@kotra.or.kr	(49)40-3405-740
헬싱키	saerom1215@kotra.or.kr	(358)9-682-9490

북미

무역관명	E-MAIL	대표전화
뉴욕	jh.kim@kotra.or.kr	(1)212-826-0900
달라스	swk@kotra.or.kr	(1)972-243-9300
디트로이트	sy.kwon@kotra.or.kr	(1)248-619-1601
로스앤젤레스	hskim@kotra.or.kr	(1)323-954-9500
밴쿠버	kimintae@kotra.or.kr	(1)604-683-1820
시카고	jyoungkim@kotra.or.kr	(1)312-644-4323
실리콘밸리	koohyunmo@kotra.or.kr	(1)408-432-5000
애틀랜타	twyoun@kotra.or.kr	(1)470-606-9332
워싱턴	jinjookim@kotra.or.kr	(1)202-857-7919
토론토	yujeong514@kotra.or.kr	(1)416-368-3399

아프리카

무역관명	E-MAIL	대표전화
요하네스버그	terry.jang@kotra.or.kr	(27)11-784-2940
나이로비	eugene89@kotra.or.kr	(254)20-2228-928
다레살람	heesu.jeon@kotra.or.kr	(255)22-292-2201
라고스	bhpyun@kotra.or.kr	(234)1-453-0500
마푸투	iruni@kotra.or.kr	(258)21-487-072
아디스아바바	jhkim0101@kotra.or.kr	(251)113-204305
아비장	shinjs@kotra.or.kr	(225)2251-4715
아크라	taurus@kotra.or.kr	(233)302-764-367
카르툼	sungju@kotra.or.kr	(249)1-83-498845

일본

무역관명	E-MAIL	대표전화
도쿄	melchior@kotra.or.kr	(81)3-3214-6951
나고야	iamjh@kotra.or.kr	(81)52-561-3936
오사카	ej.jo@kotra.or.kr	(81)6-6262-3831
후쿠오카	eunyoung.lee@kotra.or.kr	(81)92-473-2005
헬싱키	saerom1215@kotra.or.kr	(358)9-682-9490

동남아대양주

무역관명	E-MAIL	대표전화
다낭	kaiser2000@kotra.or.kr	(84)24-3946-0511
싱가포르	hblee@kotra.or.kr	(65)6426-7200
마닐라	iamchu@kotra.or.kr	(63)2-893-3244
멜버른	beglobal@kotra.or.kr	(61)3-9860-0500
방콕	Mayoun@kotra.or.kr	(66)2-035-1555
비엔티안	goeunkim@kotra.or.kr	(856)21-455-080
수라바야	hckim@kotra.or.kr	(62)31-534-7331
시드니	alice@kotra.or.kr	(61)2-9264-5199
양곤	th.Ryu@kotra.or.kr	(95)1-253346
오클랜드	kotrayoon@kotra.or.kr	(64)9-373-5792
자카르타	seungja86@kotra.or.kr	(62)21-574-1522
쿠알라룸푸르	swtak@kotra.or.kr	(60)3-2117-7100
프놈펜	mkcho@kotra.or.kr	(855)23-999-099
하노이	jinlim@kotra.or.kr	(84)24-3946-0511
호치민	jeehoon.shin@kotra.or.kr	(84)28-8-3822-3944

서남아시아

무역관명	E-MAIL	대표전화
뉴델리	seulgi_park@kotra.or.kr	(91)124-4628-500
다카	ho@kotra.or.kr	(880)2-882-4218
뭄바이	kiwookyung@kotra.or.kr	(91)22-4925-5400
벵갈루루	hschoi@kotra.or.kr	(91)80-6793-5436
첸나이	taeryong.k@kotra.or.kr	(91)44-2499-7283
카라치	JJH@kotra.or.kr	(92)21-35303771
콜롬보	dandykim@kotra.or.kr	(94)11-259-7494
콜카타	yspark@kotra.or.kr	(91)033-4055-8121

CIS

무역관명	E-MAIL	대표전화
모스크바	hjjeong@kotra.or.kr	(7)495-258-1627
노보시비르스크	jhc45@kotra.or.kr	(070)7001-0607
민스크	joohanil@kotra.or.kr	(375)17-2000-0161
바쿠	ohmh@kotra.or.kr	(994-12)436-7560
블라디보스톡	petya@kotra.or.kr	(7)423-240-7104
상트페테르부르크	th.lee@kotra.or.kr	(7)812-241-0033
알마티	steven@kotra.or.kr	(7)727-245-9493
울란바토르	wjlee@kotra.or.kr	(976)7711-0140
키예프	pth9430@kotra.or.kr	(38)044-495-2978
타슈켄트	cbs@kotra.or.kr	(998-71)140-0215

중남미

무역관명	E-MAIL	대표전화
멕시코시티	serena@kotra.or.kr	(52)55-5514-3173
과테말라	leeh818@kotra.or.kr	(502)2298-0000
리마	hj.kim@kotra.or.kr	(51)1-250-0020
보고타	jhlee@kotra.or.kr	(57)1-637-5099
부에노스아이레스	kotrajin@kotra.or.kr	(54)11-4312-0033
산토도밍고	tabien@kotra.or.kr	(1-809)567-9733
산티아고	by.kim@kotra.or.kr	(56)2-3221-0710
상파울루	andre@kotra.or.kr	(55-11)3175-3030
아바나	jbyslee@kotra.or.kr	(53-7)204-1020
아순시온	kulshock@kotra.or.kr	(595)21-2381699
카라카스	sh_ahn@kotra.or.kr	(58-212)750-2215
키토	erickotra@kotra.or.kr	(593)2-2237-111
파나마	hjinkim@kotra.or.kr	(507)264-8105

작 성 자

통상지원팀 안재현

KOTRA 자료 19-011

비관세장벽 애로해소 사례집

발 행 인	권평오
발 행 처	KOTRA
발 행 일	2019년 3월
주 소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06792)
전 화	02-1600-7119(대표)
홈페이지	www.kotra.or.kr
문 의 처	통상지원팀 (02-3460-7510)
I S B N	979-11-6097-920-6 (93320) 979-11-6097-921-3 (95320)(PDF)

산업통상자원부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